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중국 1차산품의 대(對) 한국
수출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중FTA 활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xport Promotion
Plan of Chinese Primary Commodities to Korea
-Focusing on Korea-China FTA-

濟州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李 瑋

2019年 2月

중국 1차산품의 대(對) 한국
수출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중FTA 활용을 중심으로-

指導教授 許 允 碩

李 瑋

이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8年 12月

李瑋의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

委 員 _____ ㉠

委 員 _____ ㉠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8年 12月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제3절 선행연구.....	4
1. 중국 농산품 대(對)한국 수출의 관련 연구.....	4
2. 한·중 FTA의 관련 연구.....	10
제2장 한·중 FTA의 이론적 고찰	13
제1절 FTA의 개요.....	13
1. FTA의 개념.....	13
2. FTA의 유형.....	15
3. FTA의 경제적 효과.....	17
제2절 한국과 중국의 FTA 추진현황.....	19
1. 한국의 FTA현황.....	19
2. 중국의 FTA현황.....	22
제3절 한·중 FTA의 동향.....	25
1. 한·중 FTA 추진배경.....	25
2. 한·중 FTA 추진과정.....	26
3. 한·중 FTA의 협상 주요결과.....	27
제3장 한국과 중국의 농산품 교역	33
제1절 양국의 농산품 교역.....	33
1. 한국과 중국의 농업.....	33
(1) 한국.....	33

(2) 중국.....	35
2. 양국의 농산품 무역 현황	38
(1) 한국.....	38
1) 수출입	38
2) 주요 교역 대상국.....	42
(2) 중국.....	44
1) 수출입	44
2) 주요 교역 대상국.....	46
3) 대(對)한 수출 동향.....	48
제2절 중국 농산품 대(對)한 수출의 분쟁 사례.....	48
1. 2000년 마늘분쟁.....	48
2. 2005년 한중 김치과동.....	49
3. 2015년 산둥성 마늘사건.....	50
제3절 중국 농산품 대(對)한 수출의 장애요인.....	51
1. 중국 측면의 문제.....	51
(1) 농업에 대한 투자 부족.....	51
(2) 농산품 국제경쟁력 부족.....	52
(3) 농산품 품질 부족.....	53
(4) 단일한 농산품 생산구조	53
(5) 불안정한 농산품 서비스체제.....	54
2. 한국 측면의 문제.....	54
(1) 농업의 과도한 보호 정책.....	54
(2) 정치적 요소 및 문화 장벽.....	55
제4장 한·중 FTA에 따른 대(對)한국 수출활성화 방안.....	57
제1절 한중 농산품의 양허 현황.....	57
1. 한·중 FTA 체결전의 농산품 관세 현황.....	57
2. 한·중 FTA 발효후의 1차산품 양허 내용.....	58

3. 한·중 FTA 발효후 한국 농산품 수출입의 변화.....	60
제2절 중국 농산품의 대(對)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61
1. 농산품 수출 확대.....	61
2. 양국 간의 농산품무역 마찰 완화.....	62
3. 농업 산업구조 개혁.....	63
제3절 중국 농산품의 대(對)한국 수출의 활성화방안.....	64
1. 농업 자금투입의 확대.....	64
2. 농산품의 국제경쟁력 제고.....	64
3. 농산품의 품질 제고.....	65
4. 대(對)한국 신규 수출품목의 발굴.....	65
5. 농산품 무역 서비스 혁신체제 확보.....	66
6. 국제무역 협상기술 및 전략 향상.....	67
7. 한국 농업협회와의 협력교류 강화.....	67
8. 한·중 FTA 활용을 위한 체계적 계획의 수립 및 지원.....	68
제5장 결론	70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70
제2절 연구 한계점 및 향후 과제.....	73
참고문헌	74
ABSTRACT.....	78

〈표 목 차〉

〈표 1-1〉 중국 농산품 대(對)한국 수출의 선행연구의 검토.....	9
〈표 1-2〉 한·중 FTA의 선행연구의 검토.....	12
〈표 2-1〉 세계 지역무역협정 분류별 발효 현황.....	15
〈표 2-2〉 자유무역협정의 유형.....	16
〈표 2-3〉 FTA의 경제적 효과와 영향.....	17
〈표 2-4〉 한국 FTA의 체결 현황(발효).....	19
〈표 2-5〉 한국 FTA의 체결 현황(타결).....	20
〈표 2-6〉 한국 FTA의 체결 현황(협상진행).....	20
〈표 2-7〉 한국 FTA의 체결 현황(협상재개 여건).....	22
〈표 2-8〉 중국 FTA의 체결 현황.....	24
〈표 2-9〉 한·중 FTA 추진과정.....	27
〈표 2-10〉 한·중 FTA 주요내용.....	28
〈표 2-11〉 한·중 FTA 발효 후 양국의 수입관세 양허현황.....	30
〈표 3-1〉 농업경제 관련 지표 동향.....	34
〈표 3-2〉 중국 농업 생산총액 현황.....	35
〈표 3-3〉 2017년 세계 주요 국가 1인당 농경지.....	36
〈표 3-4〉 한국의 농산품 유형별 수입 동향.....	39
〈표 3-5〉 한국의 주요 농산품 수입 현황.....	39
〈표 3-6〉 한국의 농산품 유형별 수출 동향.....	41
〈표 3-7〉 한국의 주요 농산품 수출 현황.....	41
〈표 3-8〉 한국 농산품 주요 수입 국가.....	42
〈표 3-9〉 한국 농산품 주요 수출 국가.....	43
〈표 3-10〉 중국 농산품 수출입 동향.....	44
〈표 3-11〉 중국의 농산품 유형별 수출입 현황.....	45
〈표 3-12〉 중국의 주요 농산품 교역 국가 및 지역 현황.....	47

<표 3-13> 중국 농산품 대(對)한 수출 동향.....	48
<표 4-1> 한·중 FTA 체결전 한국 측 농산품 관세 상황.....	57
<표 4-2> 한·중 FTA 한국 측 농산품 양허내용(일반품목).....	58
<표 4-3> 한·중 FTA 한국 측 농산품 양허내용(민감품목).....	59
<표 4-4> 한·중 FTA 한국 측 농산품 양허내용(초민감품목).....	59
<표 4-5> 한·중 FTA 농수축산물 중·단기 활용 계획 수립 대상 품목.....	69
<표 4-6> 한·중 FTA 농수축산물 장기 활용 계획 수립 대상 품목.....	69

<그림 목 차>

<그림 2-1> 단계별 경제 통합 단계.....	14
<그림 2-2> 세계 지역무역협정 발효 현황.....	15
<그림 4-1> 한·중 FTA 발효 이후 한국 농산품 무역 동향.....	60
<그림 4-2> 2011년-2016년 중국 농산품 수출상황.....	6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급변하는 대외 경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수의 국가들은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선호되고 있는 정책들은 주로 통상정책으로 국가 간 또는 지역별 자유무역협정(FTA)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집권을 시작하면서 주요 열강들은 새롭게 형성이 되고 있는 신규 시장 선점 및 점유를 위하여 새로운 통상 정책 및 협정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세계 경제통합이 끊임없이 깊어져 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무역 규모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경제 협력체제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국은 지역경제통합체조직을 조성함으로써 거대한 경제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공동체로 부터 북미자유무역지대까지 동남아국가연맹(ASEAN) 등 글로벌화의 발전추세는 지역경제 집단이 더욱더 국가 사이의 경제교류를 확대해오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무역협정(FTA)의 성립은 교역대상국의 경제 발전에 더 이상 빼놓을 수 없는 필연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92년 중국과 한국은 외교관계 수립 이후, 경제 무역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해왔다. 특히 중국은 이미 한국의 가장 큰 무역파트너로서 수출 시장 및 투자대상, 관광지 및 수입파트너로서 빼놓을 수 없는 국가가 되었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무역파트너가 되었다.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역사, 문화뿐만 아니라 현실 적인 상호이익까지 더해져 두 나라간의 교류가 촉진되고 있다. 양국 간의 농업 무역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농업 무역 파트너이다. 또한 지리적 근접성, 생활문화의 유사함 등의 조건들은 양국 간 농업 무역의 활성화에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한·중 FTA 발효는 표면적으로 한중 양국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부각되지만, 농

업 분야는 양국 간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중국이 가진 유리한 지리적 조건, 풍부한 농산품, 노동력, 노동비용, 가격경쟁력 과 한국이 가진 자본과 기술, 일부 고부가가치의 농산품 및 농업기계장비 등 양국의 장점을 서로 잘 발휘하여 양국의 민감 품목인 농업분야에서 윈- 윈(win-win)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중 양국 농업 상황과 한·중 FTA의 영향을 분석한 후, 한·중 FTA 발효 후 양국의 농산품 교역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한·중 FTA 발효 후 중국 농산물의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본 논문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 문헌과 국내·외에서 발간되고 있는 전문서적과 뉴스, 논문, 통계자료 등을 통하여 FTA의 일반적인 경제효과를 고찰하고, 한·중 FTA 발효 후 중국농산품 한국수출영향연구를 사례와 더불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한·중 FTA 발효 후 중국농산품이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중국 농산품의 수출 활성화방안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언급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의 방법과 구성에 대하여 기술하고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제2장은 한·중 FTA에 대한 이론적 고찰 부분으로 FTA의 개념, 유형과 경제적 효과를 기술하고, 한국과 중국의 FTA현황 그리고 한·중 FTA 동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제3장은 이론적 고찰 부분에서 한중 농산물 교역 현황을 고찰하고 현재 한중 양국의 농업 현황, 한국 농산품 수출입 및 중국 농산품 수출입 현황의 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국 농산품 대(對)한국 수출의 무역 마찰 사례를 분석하며 중국 농산품 대(對)한국 수출의 장애요인이 열거하였다

제4장은 한·중 농산품의 양허 현황과 한·중 FTA 발효 후 한국 농산품 수출입의 변화 제시하고 한중 FTA가 중국 농산품 대(對)한국 수출에 영향을 분석하였다. 게다가 중국 농산품 대(對)한국 수출의 활성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 논의의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제3절 선행연구

1. 중국 농산품 대(對)한국 수출의 관련 연구

矣秋燕·關春燕·梁成杰(2007)¹⁾은 “한·중 양국 농산품 무역 유형분석”에서 양국 모두 농산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한국은 중국의 농산품 품질 안전문제로 위생 검역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중국 농산품의 품질을 높여야 한국에서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어명근·리경호(2008)²⁾은 “한·중 농산물 무역구조 변화와 산업 내 무역 가능성 분석”에서 양국은 식품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 기술협력과 정보공유 등 신뢰 구축 작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양국 간 농업정책 협력과 식량수급 체계 구축 등 양국 농업의 공생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林平平(2010)³⁾은 “중·한 농산물산업 내 무역현황 및 문제”란 문장에서 한·중 농산품 산업 내 존재하는 무역 불균형, 무역 마찰 및 구조불균형 등 문제를 제출하였고 아울러 이 문제들의 해결에 대해 방안을 제시하였다.

李明全(2010)⁴⁾은 “중·일·한 농산물무역관계 및 자유무역구의 영향”란 문장에서 RCA지수 비교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세국가간 농산품 무역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농산품 무역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기술하였다.

王绍媛(2010)⁵⁾은 “韩国农产品进口贸易管理制度分析”에서 한국의 무역 관리 체계를 소개하고, 중국농산품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무역장벽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국 농업 발전에 대해 조기경보 메커니즘, 철저한 안전 보장 시스템과 업종을 운영하는 측에서 자율적인 조절방안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제안을 기술하였다.

凌华(2011)⁶⁾은 GTAP 모형을 통해서 한·중 FTA가 한국과 중국의 무역에 미

1)矣秋燕·關春燕·梁成杰, “中韓兩國農產物貿易類型分析”, 「商业时代」, 2007年15期, pp.14-25.
2)어명근·리경호, “한중 농산물 무역구조 변화와 산업내 무역가능성분석”, 「농촌경제」, Vol.31 No.3, 2008, pp.15-19.
3)林平平, “중한 농산물 산업내 무역현황 및 문제”, 「中国人民出版社」, 2010年第7期, p.25.
4)李明全, “중·일·한 농산물무역관계 및 자유무역구의 영향”, 「广西师范大学出版社」, 2010年第9期, p.28.
5)王绍媛, “韩国农产品进口贸易管理制度分析”, 「税务语经济」, 2010年第4期, p.29.

치는 영향과 세계의 유수 경제체 간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중 FTA가 체결 한 후에 한국이 대 중국의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품목별, 단계별로 인하했기 때문에 한국농산품가격, 생산량, 수요 등의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특히 평지씨, 기타 곡물, 야채, 과일 등의 농산품 관세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FTA가 발효 후 관련 품목들에 대한 영향이 민감할 것이라 하였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수입농산품 관세를 철폐했을 때 중국농산품의 시장가격과 수출가격이 상승한 반면에 중국농산품의 수입가격이 하락 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계 다른 경제체도 농산품의 시장가격과 수출가격이 상승하는 반면에 농산품의 수입가격이 하락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격변화로 인해 중국 은 물론 세계 다른 경제체가 국내총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한중FTA를 체결시 중국의 농산품이 대(對)한국 수출을 확대한다.

어명근(2012)⁷⁾은 한국과 중국의 FTA 협상 개시가 공식 선언되면서 양국 간 농업생산액이 증가하고 한국의 2004년 이후에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하여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야채와 과일, 특산 등 노동집약적 품목의 수출경쟁력은 여전히 강하다. 중국에서 농산물 수입 할 때 검역문제와 식량안보에 관련된 규제를 잘 활용해야 한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국에게 얼마만큼의 피해가 갈 것인지 예상하고 어떤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 국내 동물과 식물 질병과 관련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검역 검사 분야의 '지역 조건 적용'명시와 그에 따른 특별하게 지정한 지역의 동물과 식물 검역 검사 수입 규칙 해제 요구에 대비해야 하다.

崔明旭(2013)⁸⁾은 “关于韩中农产品贸易问题研究”에서 한·중 교역 현황을 살펴보고, 농산품에 대해서는 1992~2011년의 무역증가율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RAC와 TII지수 분석은 통해 우선 중국 대한국 수출 농산품의 반쯤 증가, 불안정한 농산품 수입관리제도, 높은 자원밀집형과 노동집약형농산품 비중, 부가가치 저하 및 브랜드 의식 결핍 등을 지적하였다.

6)凌华, “中韩FTA对两国农产品贸易的影响研究”, 《生产力研究》, 2011pp.157-159.

7)어명근, “한·중 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제17호, pp.64-66.

8)崔明旭, “关于韩中农产品贸易问题研究”, 吉林大学 硕士论文, 2003, pp.36-58

최석환(2014)⁹⁾은 “한·중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서 농축수산업 품목의 90%관세 감축을 가정할 때 수입증가액이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고, 한·중 FTA 타결 이후 10년차에 한국의 농업 부문 GDP는 1.7% 감소하고, 농업GDP는 1.735% 감소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은 경쟁력 제고 지원 프로그램 확산, 마케팅 과 투자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 강화, 원산지 표시 강화의 필요성,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의 조직화 및 규모화, 지역특성에 대한 고려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李阳(2015)¹⁰⁾은 중국과 한국의 농업 발전 현황을 거론하였으며, 중국 농산품의 수출 현황과 문제를 연구해 보았다. 연구 결과, 중국 농산품은 선천적으로 질적 자원의 우월성이 있지만, 자신의 질이 낮고 외국 투자 기업의 불량 경쟁, 불균형 무역 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엄격한 농산품 무역 보호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쌍방의 농산품 무역 마찰이 끊이지 않았으며, 양국 농산품 무역의 건전한 발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국과의 다양한 협력을 개선해 한국과의 다양한 협력 수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중 농산물 무역을 촉진하는 대안으로 지인 등을 이용한 고객 관리를 제안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품의 마케팅과 브랜드 마케팅을 촉진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冯晓玲(2015)¹¹⁾은 미중 양국의 25개 농산물이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의 변동된 것을 우선 분석했고, 두 지수는 각각 시장 점유율과 표준 디스플레이적인 비교적 우세한 편이며, 미국 농산품이 중국 농산품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지적한다. GTAP 모델을 활용해 중국 내 농산물 생산량과 대(對)한국 수출액의 변동을 예측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중국 농산물은 한국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심각한 타격과 함께 시장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 지대에서 중국 내 농업에 미치는 충격에 대비 및 대응해야 할

9)최석환, “한·중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p.29.

10)李阳, “中国农产品对韩国出口存在的问题及发展对策”, 《企业导报》, 2015年第9期, pp.73-77.

11)冯晓玲, “美韩FTA下中国农产品对韩国出口变动分析”, 《世界经济研究》, 2015年第1期, pp.91-101.

것이다.

许会会(2015)¹²⁾은 “中国对韩农产品出口现状分析”에서 2002년-2014년 중국 농산품 대(對)한국 수출액을 바탕으로 총량과 구조 양쪽에서 중국 농산품의 대(對)한국 수출 현황을 분석한다, 개별 연도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수출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 구조 측면에서 각종 농산품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한중 FTA를 계기로 존재 문제를 노력 개선하고, 중국 농산품 대(對)한국 수출이 확대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우신신(2016)¹³⁾은 “한·중 농산품무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양국 농산품 교역에서 발생했던 마늘분쟁, 생우유분쟁, 김치분쟁의 발생원인, 피해규모, 후속조치, 예방대책 등을 살펴보았다. 무역특화지수에 근거한 양국 농산품의 경쟁력 비교를 통해 한국은 콩, 고추, 토마토 류 등에서 경쟁력이 있고, 한국의 특산품이 인삼은 한류 영향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으며, 가공식품에서는 라면이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구기보, 박창수, 두흔흔(2016)¹⁴⁾은 “한·중 농산물 교역 현황 및 특화전략 도출”에서 무역특화지수 분석을 통해 한국은 인삼과 사과 정도만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있고, 다른 품목들은 중국에 비해 수출경쟁력이 높지 않으며, 특히 생강, 현미, 콩, 마늘 등은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분석하였다.

李凌(2016)¹⁵⁾은 “中韩FTA对韩国“三农”的可能影响研究”에서 한·중 FTA 발효가 한국의‘농업, 농촌, 농민’등 삼농(三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한·중 FTA는 농업 GDP, 식량안전 문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비농업 및 제3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농민의 농업 수입은 감소시키나 비농업 수익은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후륙범(2017)¹⁶⁾은 “한·중 FTA의 영향과 대응책에 관한 연구: 농산품무역을

12)许会会, “中国对韩农产品出口现状分析”, 《全国商情》, 2015年第31期, pp.39-40.

13)도우신신, “한중 농산품무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p.135-136.

14)구기보, 박창수, 두흔흔, “한중 농산물 교역 현황 및 특화전략 도출”, 「현대중국연구」, 제18권 제3호, 2016, p.59.

15)李凌, “中韩FTA对韩国“三农”的可能影响研究”, 「世界农业」, 总455期, 2016, pp.159-163.

16)후륙범, “한·중FTA의 영향과 대응책에 관한 연구:농산품무역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p.19.

중심으로”에서 한·중FTA 발효1년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발효 1년 후인 2016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농산물 전체 수출은 2015년에 비해 1.57% 증가하여 같은 기간의 대 세계 수출증가율인 2.85%보다 낮았다. 반면 대중국 농산물 전체 수입은 2015년에 비해 2.1% 감소하여 같은 기간의 대 세계 수입 감소율인 -3.8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중국 농산품 대(對)한국 수출의 선행연구의 검토

연구자(년도)	제목	내용
矣秋燕·關春燕·梁成杰 (2007)	한·중 양국 농산품 무역 유형분석	-한국은 중국의 농산품 품질 안전문제로 위생검역을 강화 예상 -한국에 수입 확보에 따른 농산품의 품질 제고
어명근·리경호 (2008)	한·중 농산물 무역구조 변화와 산업 내 무역가 능성 분석	-농업의 공생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주장
林平平 (2010)	중·한 농산물산업 내 무역현황 및 문제	-한·중 농산품 산업 내 존재하는 무역 문제 제출 -해결방안 제시
李明全 (2010)	중·일·한 농산물무역관계 및 자유무역구의 영향	-RCA지수 분석을 통해 농산품 무역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王紹媛 (2010)	韩国农产品进口贸易管理制度分析	-중국 농산품이 한국에 수출할 때 주요 무역장벽을 분석 -중국 농업발전에 구체적인 제안
凌华 (2011)	中韩FTA对两国农产品贸易的影响研究	-GTAP모형을 통해서 한·중 FTA가 한국과 중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하고 대 세계 다른 경제체간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분석
어명근 (2012)	한·중 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방안	-한·중FTA가 체결되면 한국에게 얼마만큼의 피해가 갈 것인지 예상하고 어떤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崔明旭 (2013)	关于韩中农产品贸易问题研究	-무역 증가율 분석 -RCA지수, TII지수
최석환 (2014)	한·중FTA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한·중 농산품 경쟁력 분석 -한국의 대응방안
李阳 (2015)	中国农产品对韩国出口存在的问题及发展对策	-한·중 양국의 농업 발전현황 분석 -한·중 농산품 무역을 촉진하는 대안 제시
冯晓玲 (2015)	美韩FTA下中国农产品对韩国出口变动分析	-GTAP모형을 활용해 중국 내 농산물 생산량과 대(對)한국 수출액의 변동을 예측
许会会 (2015)	中国对韩国农产品出口现状分析	-2002년-2014년 중국 농산품 대 한국 수출 현황 분석
도우신신 (2016)	한·중 농산품무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마늘분쟁, 김치분쟁 등의 발생원인 분석 -후속적인 예방 대책 제시
구기보, 박창수, 두흔흔 (2016)	한·중 농산물 교역 현황 및 특화 전략 도출	-TSI지수 분석을 통해 한국의 특화 및 보호 품목 제시
李凌 (2016)	中韩FTA对韩国“三农”的可能影响研究	-농업 GDP등에 부정적 영향 -비농업 및 제3산업 발전 가능
후류범 (2017)	한·중FTA의 영향과 대응책에 관한 연구: 농산품무역을 중심으로	-한·중 양국 간 무역 현황 분석 -한·중FTA영향 및 대응방안

2. 한·중FTA의 관련 연구

박변순(2011)¹⁷⁾은 연산가능일반균형(CGЕ)과 최신 범용데이터베이스인 GTAP v.7을 이용하여 한·중 FTA가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계측한 결과 한국의 GDP2%에서 4%정도 증가하면 수출은34%,수입은 35%정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산품 수입은 105~209%늘어나며 농업생산은 1.2%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된 데이터가 2004~2006년에 불과하여 급성장하는 중국 경제의 잠재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 농업에 영향이 큰 WTO/DDA 협상과 한미 및 한·EU FTA의 발효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연구결과의 신뢰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손문정(2013)¹⁸⁾은 한국과 중국의 한·중 FTA에 관한 예비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양국의 긍정적인 발전관계를 예측했다. 양국 간의 정치적인 우호관계와 원활한 개발로 인한 경제협력 및 상호 자유무역의 적극적인 태도는 한·중 FTA의 발전에 단단한 토대를 만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우호적 관계의 발전, 경제협력, 동북아시아 및 동아시아경제 통합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농업관련 무역에 관한 상호수요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이며, 가장 복잡한 과제라고 규명하여 두 나라의 농업발전과 자원기부금상황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두 나라의 자유무역은 경쟁의 과정에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리평(2013)¹⁹⁾은 “한·중 FTA에 추진에 따른 경제효과 및 대응방안”에서 한·중 FTA 추진 때 방해될 농산물부문 개방에 대해서 중국의 평가를 살펴보면, 중국의 채소류 및 곡물류의 수출이 절대 우위를 갖고 있다. 한·중 FTA 체결되면 농산품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 적절한 정책을 취한다면 ‘쇠고기 파동’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건여(2014)²⁰⁾은 “한·중 FTA의 주요쟁점에 대한 연구”에서는 농업, 철 강,

17)박변순, "중국 시장서 경쟁력 유지위해 한·중 FTA 적극 나서야", 「조선일보」, 2011.

18)손문정, "한국과 중국FTA체결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p.19-23.

19)중리평, "한·중 FTA에 추진에 따른 경제효과 및 대응방안",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47.

20)이건여, "한·중 FTA의 주요쟁점에 대한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p.22.

자동차 산업의 대 중국 무역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FTA 이후의 각 부문별 상황을 예측하였는데, 농업 부문의 경우 중국의 식문화 및 식재료 고급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한류의 전파, 한국의 긍정적인 평가 등의 요소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되는 고급 농산물 및 농산품의 대 중국 진출이 비교적 수월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郭锐·杨端程(2015)²¹⁾은 한·중 FTA 체결은 양국 경제 협력에 더 큰 발전 기회와 협력 전망을 갖고 있고, 동시에 새로운 문제점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무역, 정치안보, 사회인문 세 가지 방면에서 이러한 기회와 도전을 상세히 해석했다. 저자는 한·중 FTA가 경제 분야의 협력 중심으로 진행되어 향후에는 정치·안보·인문·사회 분야까지도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도전의 대응, 심화, 협력하는 데에 여전히 책임은 무겁고 길은 멀다고 강조했다.

牛林杰(2015)²²⁾은 '제 1 차 한·중 관계 포럼'에서 한중 관계에 대한 양국계 인사들의 의견을 보고했다. 한·중 FTA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 학자들의 태도들을 분석했다.

舒朝普(2016)²³⁾은 한·중 FTA가 체결된 이후 한국 상품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증가했음을 지적하면서 한·중 FTA 관련 품목의 관세가 모두 철폐되면서 한국의 대 중국 수출량이 급증하게 될 것을 염려했다.

21)郭锐、杨端程, “FTA时代的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发展：机遇、挑战与思路”, 《当代韩国》, 2015, pp.31-43.

22)牛林杰, “第一届中韩关系论坛综述”, 《当代韩国》, 2015, pp.117-120.

23)舒朝普, “借势中韩FTA韩国刷新出口中国新纪录”, 《中国外贸》, 2016, pp.33-40.

〈표 1-2〉 한·중 FTA의 선행연구의 검토

연구자(년도)	제목	내용
박변순 (2011)	중국시장서 경쟁력 유지 위해 한·중 FTA 적극 나서야	-농업,철강,자동차 산업의 한국 대중국 무역 현황 -FTA체결후 각 부문별 무역 상황 예측
손문정 (2013)	한국과 중국FTA체결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한·중FTA의 주요쟁점 제시 -양국 무역에양향 및 대응방안
증리평 (2013)	한·중FTA에 추진에 따 른 경제효과 및 대응방 안	-한·중FTA 추진과정 및 양국 무역 현황 -경제효과 및 대응방안
이건여 (2014)	한·중FTA의 주요쟁점에 대한연구	-한·중FTA 추진과정 -양국의 무역현황 분석 -한국에서 생산되는 고급농산물 대 중국 진출 분석
郭锐·杨端程 (2015)	FTA时代的中韩战略合作 伙伴关系发展：机遇、 挑战与思路	-한·중FTA 체결은 양국 경제 협력에 더 큰 발전기회 분석 -새로운 문제점 과 도전 분석
牛林杰 (2015)	제 1 차 한중 관계 포럼	-한·중FTA 체결은 양국에 양향을분석 -한·중FTA 체결후에 양국 무역발전에 전망
舒朝普 (2016)	借势中韩FTA韩国刷新 出口中国新纪录	-한·중FTA체결후 한국 상품의 중국시장 점유율 분석 -한·중FTA 관련품목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량 제시

제2장 한·중 FTA의 이론적 고찰

제1절 FTA의 개요

1. FTA의 개념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상호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권, 정부조달, 무역 규제 등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1995년에 국제무역 질서의 근간이었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로 새롭게 재편되었다.

WTO는 최혜국대우(Most-Favored Nation Treatment, MFN)와 같은 비차별 원칙을 바탕으로 각국이 동등한 조건으로 자유무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덤핑 규제, 관세인하 요구, 분쟁조정 등의 권한과 그 작동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다²⁴⁾WTO 체제는 무역자유화의 추진 및 발전을 위한 관련 규정과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 간 FTA의 체결을 허용하고 있으며, 양자 간 FTA의 이행은 WTO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²⁵⁾

WTO는 모든 회원국의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는 다자주의 원칙으로 한다. 반면 FTA는 WTO가 인정하는 예외조항을 활용하여 체결국 사이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 특혜무역체제라는 것이다.

FTA의 세부내용은 어느 나라와 체결되는 것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 간의 FTA는 상품 분야의 관세인하나 무역자유화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1995년 WTO 체제의 출범 이후 FTA의 논의 범위를 확대해 관세철폐, 서비스 및 투자자유화, 노동, 환경,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규제제도,

24)성재호, 채은선,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의 차별적 적용과 최혜국대우”, 법무부, 「통상법률」, 제91호, 2010.

25)殷朝兵, “中國FTA寅踐中的利益選擇和寅現”, 「時代金融」, No.05, 2017, p.12.

경제정책 등 기업 활동의 전 분야를 논의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²⁶⁾

또는 FTA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 형태로서,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가고 있다.<그림 2-1> 참조).

<그림 2-1> 단계별 경제통합단계



자료:FTA강국,KOREA(<http://fta.go.kr/main/>)

<표 2-1>에 보면 2018년 6월 기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건수는 459건이며, 이 가운데 상품무역을 다룬 자유무역협정(FTA)이 25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 55.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2>에 따라 시기별로 보면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전체 459건의 협정 중 1995년 이후에만 전체의 90.4%에 해당하는 415건이 발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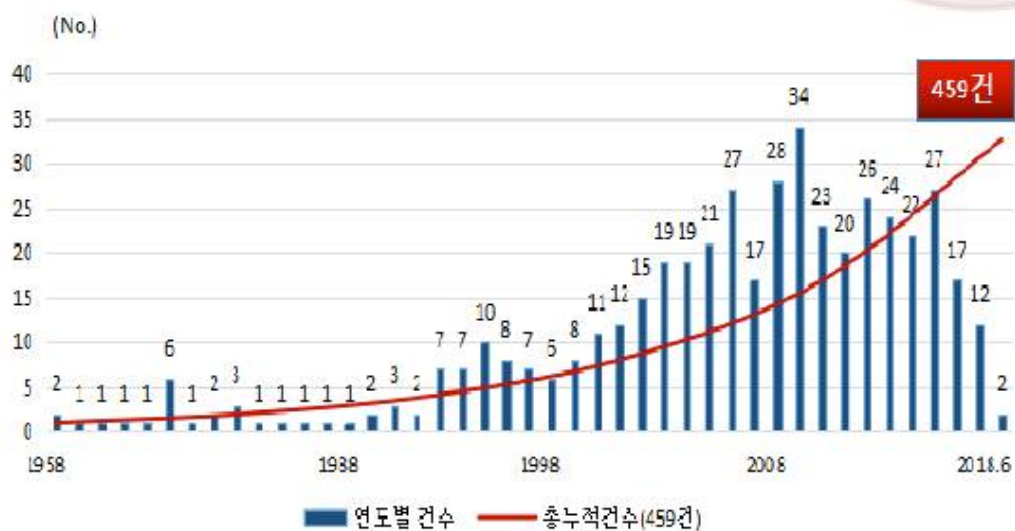
26)부계미, “한·중 FTA가 한국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p.7.

<표 2-1> 세계 지역무역협정 분류별 발효 현황

구분	FTA	서비스	관세동맹	개도국간 협정	계
발효건수	253	152	30	24	459
비중	55.1	33.1	6.6	5.2	100
	88.2		11.8		100

자료:WTO(www.wto.org)

<그림 2-2> 세계 지역무역협정 발효 현황



자료:WTO(www.wto.org)

2. FTA의 유형

자유무역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상품무역이다. 기업은 상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상품을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상품의 경쟁력은 가격, 상표, 마케팅 등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FTA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가격 측면이 강조된다.

기업이 FTA를 활용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출상대국가에서 수입통관을 하는 과정에서 FTA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경쟁 상

품보다 낮은 비용으로 시장에 자기의 상품을 유통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일반적으로 인접국가 사이에 관세 등이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무역을 확대했던 초기 FTA에서 발전하여, 인접국이 아닌 국가 사이에서도 FTA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즉, 국가가 경제적 상호보완성에 따라 인접국가 아닌 다른 지역협력체에 속하는 국가와 FTA을 체결하거나 또는 지역 협력체 자체와 FTA을 체결하는 경우도 나타난 것이다. 심지어는 지역협력체 사이의 FTA도 등장 하게 되었다. FTA의 유형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²⁷⁾

<표 2-2> 자유무역협정의 유형

유형	특징
국가 사이의 FTA	국가들이 협정 체결의 당사자 국가간 시장의 확대 또는 무역진출의 발판마련 FTA의 기본형태
국가와 지역협력체 사이의 FTA	국가와 지역협력체가 협정 체결의 당사자 해당 지역협력체에 당사국이 편입되거나 상대방의 시장에 진출 칠레와 MERCOSUR의 FTA과 멕시코와 EU의 FTA이 대표적
지역협력체 사이의 FTA	지역협력체들이 협정 체결의 당사자 지역협력체 사이의 통합 NAFTA또는 MERCOSUR와 EU의 FTA의대표적

자료: 염호, “한·중 FTA 체결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2013, p4

첫째, 국가 사이의 FTA은 양국 또는 복수국 사이에 FTA을 통하여 관세 등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당사국의 이익을 도모한다. 이러한 경우가 FTA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둘째, 국가와 지역협력체 사이에도 FTA의 체결이 가능하다. 만일 어느 지역협력체와 자유무역을 체결한 국가가 그 지역협력체에 인접한 경우, FTA은 해당 국가가 협정을 체결하는 상대방 지역협력체에 편입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국가 사이의 FTA나 국가와 지역협력체 사이에 FTA가 아니라 지역협력체 사이의 FTA도 체결될 수 있다²⁸⁾

27)고준성,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법무부 한중법학회, 2003, p88.

28)박태호, 「지역주의 경제 질서와 한국의 FTA(FTA) 정책」, (한국경제학회창립 30주년 정책세미나, 한국국 제경제학회),2007.

3. FTA의 경제적 효과

FTA의 경제적 효과는 대상에 따라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효과, 역외 비회원국들에 대한 효과, 크게 역내 회원국들에 대한 효과 등 세 가지 방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 경제 통합의 유형에 따라 역내·외 국가들에 미치는 효과는 다르고, 게다가 동일한 유형의 지역 경제 통합이라도 회원국들이 처한 경제여건이나 구체적인 통합협정 내용에 따라 비회원국들과 회원국들의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효과는 다르다. 따라서 지역 경제 통합 형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가정이 필요하며, 실증적인 효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도 경제통합을 이룬 국가들의 구체적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²⁹⁾ 또한 다른 효과의 성격에 근거하여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는 정태 효과와 동태 효과 2가지로 분류된다. 다음 <표 2-3>는 FTA 경제적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

<표 2-3> FTA의 경제적 효과와 영향

효과의종류		영향의 평가	
		역내의 영향	역외의 영향
동태효과	시장확대효과	+	+
	경쟁촉진효과	+	+
정태효과	무역창출효과	+	+
	무역전환효과	+(-)	-

자료:산업연구원

정태효과는 Jacob Viner가 무역창출효과³⁰⁾와 무역전환효과³¹⁾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그는 FTA 체결로 인한 역내 회원국들의 경제적 이해득실은 협정체결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중에 어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

29)이상윤,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2005, p.30.

한중법학회

30)무역창출효과는 협정체결 전에 소비하던 고가의 국산제품이 상대적으로 저가인 역 내산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31)무역전환효과는 역내관세철폐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더 저가인 역외 외국재화가 고가의 역내상품으로 대체된 경우를 말한다.

FTA 체결에 따른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특화가 강화되면서 생산요소가 비교우위 산업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생산측면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되고, 소비 측면에서는 보다 값싼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어 복지수준이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체약국간 관세철폐가 교역상의 왜곡을 가져올 수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관세철폐 전 보다 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가진 역외 교역국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특혜적인 관세철폐로 역외 저가상품의 수입이 저해될 수 있다, 이 경우는 체결국의 복지수준은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을 무역전환효과라 하며, 이는 역내 관세철폐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더 저가의 역외재화가 고가의 역내재화로 대체된 경우를 말한다.³²⁾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의 상대적인 크기는 포괄범위, 경쟁력, 산업구조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하여 결정되지만, 무역창출효과가 일반적으로 무역전환 효과를 훨씬 초월한다. 또한 역외국에 대한 관세가 점차 양허에 따라 무역 전환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동태적효과는 FTA 체결 후 한동안에 따라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를 의미한다. 게다가 동태효과는 FTA의 내용에 따라 정태효과보다 더 중요할 부분 나올 수도 있다. 특히, 경쟁촉진 요인, 규모의 경제, 외국인 직접투자 등이 동태효과 측면에서 역내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들의 동태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 FTA 체결로 역내시장이 확대되어 역내경제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이 중에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 간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요구하기에 역내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수 있는 산업의 경우에는 역내시장의 확대로 생산량이 증가하면 제품단위당 평균생산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그 결과 역내재화가 역외재화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도 있으며, 당분간 발생하였던 무역전환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단위당 생산비용이 감소하여 소비자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게 된다.³³⁾

32)박설혜, "한중 FTA 협상에 관한 연구.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p.22-24.

33)위영개,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p.31-32.

제2절 한국과 중국의 FTA 추진현황

1. 한국의 FTA현황

한국은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무역이 한구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한국은 많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하거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 타당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의 체결을 첫 시작으로 2015년 1월1일 한·캐나다 FTA의 체결하고,2015년 5월 한·베트남 FTA 그리고 2015년 6월 한·중 FTA가 정식 서명 완료되었고, 2013년 2월21일 한·콜롬비아 FTA가 2016년 7월 15일 발효되었다. 2018년 9월까지 총 15건 54개 국가와 FTA가 발효된 상태이다.<표 2-4> 참조).

<표 2-4> 한국 FTA의 체결 현황(발효)

구분	대상국	진행상황	의의
발효 (15건)	칠레	발효(2004.4.)	최초의 FTA,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발효(2006.3.)	ASEAN 시장의 교두보
	EFTA(4개국)	발효(2006.9.)	유럽시장 교두보
	ASEAN(10개국)	발효(2007.6.)	한국의 제2위 교역 대상 (13년 기준)
	인도	발효(2010.1.)	BRICS국가, 거대시장
	EU(28개국)	발효(2011.7.)	세계 최대경제권(GDP기준)
	페루	발효(2011.8.)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발효(2012.3.)	거대 선진경제권
	터키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발효(2013.05.01.) 서비스무역 및 투자 발효(2018.08.01.)	유럽·중양아 진출 교두보
	호주	발효(2014.12.)	자원 부국 및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발효(2015.1.)	북미 선진시장
	중국	발효(2015.12.20.)	한국의 제1위 교역대상(15년 기준)
	뉴질랜드	발효(2015.12.20.)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발효(2015.12.20.)	한국의 제3위 투자대상국(15년9월 기준)
	콜롬비아	발효(2016.07.15.)	자원부국,중남미신신흥시장

자료:산업통상자원부,FTA추진현황(18.9월기준),<http://fta.go.kr/main/situation/kfta/ov/>

2010년 10월 한국과 중미(5국) 공동연구 개시하고, 2018년 2월 21일까지 한·중미(5국) FTA를 정식 서명되었다

<표 2-5> 한국 FTA의 체결 현황(타결)

구분	대상국	진행상황	의의
타결 (1건)	중미	2010년 10월 공동연구 개시, 2011년 4월 공동연구 보고서 완료 2015년 6월 협상 개시 공식 선언, 7월 한중미FTA 예비협약, 총 7차례 협상 개최(2015.9월, 11월/ 2016.2월, 5월, 8월, 9월, 10월) 2016년 11월 실질 타결 선언, 2017년 3월 10일 가서명, 2018년 2월 21일 정식서명 (*중미5개국:파나마,코스타리카, 온두라스,엘살바도르, 나카라과)	중미 신시장 창출

자료:산업통상자원부,FTA추진현황(18.9월기준),<http://fta.go.kr/main/situation/kfta/ov/>

그 외에도 한·중·일, RCEP(16개국)³⁴등과 FTA 협상 10건이 진행 중이다. 동아시아 내에서는 중국, 일본 등과의 FTA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기여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표 2-6> 한국 FTA의 체결 현황(협상진행)

구분	대상국	진행상황	의의
협상 진행 (10건)	한중일(3국)	2003년~2009년 민간공동연구, 2010년 5월~2011년 12월 산관학 공동연구, 2012년 5월 3국 정상회의시 “연내 협상개시 목표” 합의,2012년 11월 20일 협상개시 선언, 총 13차례 공식협상 개최 (2013.3월, 7월~8월, 11월/ 2014.3월, 9월, 11월/2015.1월, 5월, 9월/ 2016.1월, 6월/ 2017.1월, 4월/ 2018년 3월), 총 5차례 실무협상 개최(2014. 11월/ 2015.4월, 7월, 12월/ 2016.4월)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RCEP(15개국)	2011년 11월 ASEAN이 RCEP 작업계획 제시,2012년 11월 20일 동아시아 정상회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34)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은 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의 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FTA이다.

		의 계기 협상개시 선언, 총 23차례 협상개최 (2013.5월, 9월/ 2014.1월, 3~4월, 6월, 12월/2015.2월, 6월, 8월, 10월/ 2016.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2017.2월, 5월, 7월, 10월/ 2018.2월, 5월, 7월) (*RCEP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ASEAN)	
	이스라엘	2009년 8월 민간공동연구 개시, 2010년 8월 완료, 2016년 5월 협상개시 합의, 6차례 협상 개최(2016.6월, 12월/2017.3월, 4월, 5월/2018.3월)	창조경제 모델국가
	에콰도르 SECA	2012년 4월 통상교섭본부장 에콰도르 통상차관 면담 계기 한-에콰도르 TA 타당성 연구 진행 합의 9월~2013년 6월 민간공동연구 실시 2015년 2월 한-에콰도르 TA 추진가능성 검토 회의 4월 한-에콰도르 TA 추진 관련 대국민 공청회, 8월 25일 한-에콰도르 SECA 협상 개시 선언, 총 5차례 협상 개최(2016년 1월, 3월, 8월, 10월, 11월)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MERCOSUR	2017.3월 예비협의를 완료 및 협상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 2017.4월 공청회 개최, 2017.12월 신속한 협상개시 중요성에 합의, 2018.5월 협상 개시 공식 선언, 2018.9월 제1차 협상 개최(한-메 TA 협상은 회원국 의무 불이행으로 자격 정지 상태인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4개국과 진행) (*MERCOSUR: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남미 최대시장
	한-ASEAN FTA 추가자유화	2017년 8월 제16차 이행위원회 개최	교역확대 및 통상환경 반영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총 5차례 개선협상 개최 (2016.10월 /2017.2월, 9월, 12월/ 2018.5월)	교역확대를 위한 주력수출 품목양허 및 원산지기준 개선
	한-칠레 FTA 업그레이드	2016년 11월 개선협상 개시 선언	통상환경 변화 반영
	한-미 FTA 개정	총 3차례 개정협상 개최 (2018.1월, 2월, 3월)	상호호혜성 증진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총 2차례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최 (2018.3월, 7월)	한국의 제1위 서비스수출국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FTA 추진 현황(18.9월 기준), <http://fta.go.kr/main/situation/kfta/ov/>

그리고 공동보고서를 완료했거나 협상재개 여건이 조성된 것인 EAEU, 멕시코, GCC³⁵⁾ 등 3건이 있다 .

<표 2-7> 한국 FTA의 체결 현황(협상재개 여건)

구분	대상국	진행상황	의의
협상재개 여건 조성 (3건)	EAEU	2016.8월 민간공동연구 완료 3차례 한·EAEU 정부간 협의회 개최(2016년 10월, 11월 / 2017.4월), 2017.9월 한러정상 회담 계기 FTA협의를 위한 공동 실무작업반 설치 합의 (*EAEU: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성장잠재력과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신흥시장
	멕시코	2008년 6월 제2차 협상 개최 후 중단	북중미 시장 교두보
	GCC	2009년 7월 제3차 협상 개최 후 중단	자원부국, 한국의 제3위 교역 대상 ('15년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FTA추진현황(18.9월기준), <http://fta.go.kr/main/situation/kfta/ov/>

한국의 대외경제 규모는 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중에서도 많은 나라가 FTA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 상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대외시장을 발전시키려면 FTA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은 같은 시간에 여러 나라와 FTA 협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FTA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한국 FTA의 중요한 협상 분야는 관세철폐,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기술수준 등이다.

2. 중국의 FTA현황

중국은 WTO 회원국을 된 후 FTA에 대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2년 11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열린 제 6 차 중국-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한 주 총리(朱鎔基)와 아세안 10 개국 정상들은'중국

35)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는 1981년 5월에 페르시아 만안의 6개 아랍산유국이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로서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 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국 상호간의 경제, 안정보장에 관한 활동할 수 있다.

과 아세안의 포괄적 경제협력 합의'를 체결, 중국은 2003 년부터 홍콩과 마카오가 FTA 체결을 시작한다. 2005 년에 중국과 아시안 10 국, 칠레 FTA 체결을 하고 2006 년에 중국과 파키스탄 FTA 체결을 하였다. 2008 년에 중국과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FTA 체결을 하였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중국의 체결한 국가 중에서 첫 번째로 선진국과 체결된 국가이다 .2010 년에 코스타리카 와 FTA 체결을 하고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기로 합의한다. 2013년 7월 6일 중국과 스위스 간의 무역협정을 체결 한다. 2014년 11월 17일 시진핑 주석의 호주 방문 중 중국과 호주 가 중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선언 한다. 호주는 중국의 모든 품목 관세를 제로로 내린다. 동시에 중국의 호주에 대한 절대 다수의 제품 관세는 결국 제로로 떨어진다. 결국 2015년6월17일에 중호 FTA가 체결했다. 동년5월에 한중 FTA가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아래에 <표 2-5>에 따라 보면 2018년 10월 1일까지 중국은 아세안(ASEAN)·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스위스· 한국· 호주· 몰디브· 그루지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중국정부와 홍콩· 마카오 지방정부가 체결된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총 15개 자유무역협상을 체결 완료 되었다. 게다가 지금 협상 진행 중 FTA가 7개 있다.

〈표 2-8〉 중국 FTA의 체결 현황

구분	대상국	진행상황
발효 (15건)	홍콩	발효(2003.06.29)
	마카오	발효(2003.10.17)
	아세안 10 개국	발효(2005.07.20)
	칠레	발효(2005.11.18)
	파키스탄	발효(2006.11.24)
	뉴질랜드	발효(2008.04.07)
	싱가포르	발효(2008.10.23)
	페루	발효(2009.04.28)
	코스타리카	발효(2010.04.08)
	아이슬란드	발효(2013.04.15)
	스위스	발효(2013.07.06)
	한국	발효(2015.06.01)
	호주	발효(2015.06.17)
	몰디브	발효(2017.12.08)
	그루지야	발효(2018.01.01)
협상진행 (7건)	한중일	2003~2009미간공동연구 2012.11~2018.03(총13차례 협상)
	스리랑카	2014.09~2017.01(총5차례 협상)
	이스라엘	2016.03~2017.12(총3차례 협상)
	노르웨이	2007.06~2018.09(총12차례 협상)
	모리셔스	2018.09(협상 완료)
	몰도바	2018.03(협상 시작)
	파나마	2018.07~2018.08(총2차례 협상)
협상준비	인도, 콜롬비아, 캐나다, 네팔, 몽골	

자료:중국자유무역구서비스사이트(2018.10.01기준)<http://fta.mofcom.gov.cn/>

무역 상품 구성을 보면, 중국은 각 FTA 파트너들의 수출 상품을 여전히 노동 집약적인 제품 위주로, 전기·가전·섬유·의류·신발 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수입 상품은 자원, 에너지, 농산물 등 초급 제품을 위주로 한다.

이러한 무역 상호 보완성은 양자 무역의 지속적인 증가로 반영한다.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중국은 이미 건설 중인 FTA를 체결한 국가와 지역 내에서 양자 무역량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FTA는 서비스, 투자, 직접재산권 등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

하는 것이 특징이다. FTA의 협상 방식은 점진적 개방과 완전 개방식 두 가지 있다. 점진적 개방은 상품 시장과 서비스 시장을 분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완전 개방식은 일회적으로 투자 시장, 상품 시장,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양국 이익의 균형에 대해 유리하다. 중국은 전자를 선택하고 있다.

제3절 한·중 FTA의 동향

1. 한·중 FTA 추진배경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일반적인 연구 결론은 양국 간 교역이 확대되고 간접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총체적으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큰 수익을 가져올 것이다.

FTA를 체결은 것은 양국의 비교 우위를 더욱 잘 발휘할 수 있다. 한국은 신흥 산업국으로서 선진 기술과 풍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은 비좁고 자원과 노동력 부족이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으로 시장의 용량이 크고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하지만 자금과 기술이 부족하다. 이러한 경제적 상호 보완은 양국의 경제 무역 관계를 빠르게 발전시키는 기본적인 유력한 요소, 중국은 주로 노동력 집약형 과 토지 집약적인 제품에 비교 우위를 두고 있으며, 한국은 기술과 자본 면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FTA 체결은 산업적 분업을 통해 비교 우위를 유도한다. 그러나 한중 경제 구조에도 유사한 산업 부문이 있고 특히 전자제품, 자동차 및 부품 부문에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FTA를 체결은 비교적 두드러진 무역과 투자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장차 거대한 잠재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2014년에 한중 양국의 무역은 한국 대외 무역 총액의 4분의1에 차지하여 이미 미국, 일본 와 러시아 삼국에 대한 한국의 무역 총액은 넘어섰다. 2013년에 한중 쌍무 무역 2,700억 달러를 넘어섰고, 그 중에서도 한국의 대중 무역 흑자는 920억 달러에 달한다. 한중 무역의 잠재력이 매우 커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히 한중 무역 불균형도 확대될 수 있다. 중국의 대 한국 무역 적자는 수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관세율도 한국 보다 높다. 일단 자유 무역이 개방되면 단시간에 중국은 수출보다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역내 시장 확장으로 외부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수 있어 무역 전이의 충격도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다가 양국의 시장 수요가 확대되고, 한중 양국의 대부분의 관세가 인하된 후 중국 시장의 가속 개방과 무역 법규 투명성이 제고되어, 객관적으로 한국 제품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어 중국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하이테크 분야에서도 한국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대 중국 수출품의 증가는 원자재와 보조자재 외에 주로 이동 통신 제품, 전자 정보 통신 제품 및 부품, 고급 가전 제품을 포함한다.

2. 한·중 FTA 추진과정

한·중 FTA의 협상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후진타오(胡錦濤)중국 국가주석과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1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한중간 상호 자유 무역 협정(FTA)의 타당성에 관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양국 대표는 2004년부터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체결 사업 추진 협의회를 열었다.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 방중 시 양국 정상은 한중 FTA를 통해 양국의 무역 활성화를 시키자고 동의하면서 한·중 FTA의 가동은 양국의 무역 관계 발전이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2012년 양국은 한·중 FTA 체결의 타당성을 놓고 민간 연구를 전개 한다. 양측의 연구 결과는 FTA의 체결이 양국의 상호 이익을 얻음 실현할 것으로 나타난다. 그동안 한국은 유럽연합(EU),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했고, 중국 초청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해서, 한·중 FTA는 한 동안 침체에 빠진다. 2012년 5월까지 한·중 FTA협상이 본격 가동 되면서 14차 담판과 협상을 거쳐 2014년 11월 실질 담판이 완성한 것을 공표 되고, 양국은 한·중 FTA체결에 일치 합의 한다. 이로써 한·중FTA는 성공적으로 추진 실시 단계에 들어간다. 2015

년 6월 1일, 중국 상무부 부장 가오호오(高虎城)은 중국정부대표로써 서울에서 한국 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과 함께 한중FTA 정식적인 체결했고, 2015년 11월 30일, 한국 국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 한중FTA를 통과시켰다.

이에 2015년 12월 20일에 한중FTA 정식적인 발효되었다.

<표 2-9> 한·중 FTA 추진과정

추진 단계	시간	주요 사건
민간 연구 단계	2004년 2월	중국은 중한 fta의 실행 타당성에 대한 연구할 의견을 제시 한다
	2004년 11월	중국 fta 민간 연구가 본격화 된다.
	2005년 3월	한중 양국은 민간 연구의 단계적 성과에 대해 협의를 이루었다.
관산학 연합 연구 단계	2006년 11월	양국은 한·중 fta 관산학 연합 타당성 연구를 가동 하기로 확정한다
	2007년 3월 ~ 2008년 6월	양국은 5 차례의 한중 fta 관산학 연합 연구회의를 열고 연구보고서를 제출한다
	2010년 5월	양국 경제 무역 부장이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다.
담판 단계	2012년 5월	양국의 경제 무역 부장 회의가 개최 되어 한·중fta담판 개시를 선언 한다
	2012년 5월 ~ 2014년 11월	2012년 5월~ 2014년 7월, 14 차례 협상을 함께 진행하였고, 2014년 11월 협상이 합의되었음을 선포.
	2015년 1월 ~	2015년 6월 1일, 한중FTA 정식적인 체결. 2015년 11월 30일, 국회 통과. 2015년 12월 20일, 한중FTA 발효.

자료:中国自由贸易服务网(<http://fta.mofcom.gov.cn/>)

3. 한·중 FTA의 협상 주요결과

2015년 6월, 한·중 양국은 공동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으며, 협정내용은 규범·협력관련 6개, 서비스·투자관련 5개, 상품관련 6개, 총칙 관련 5개 등 총 22분야로 구성되어있다. 명실 공히 통상무역관련 제반분야를 모두 망라하는 포괄적인 FTA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양국은 협정 서명 후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으로 서비스 무역 측면의 전면적인 협상을 계속 진행하기로 약속했고, 진입 전의 국민대우 및 포괄주의 방식으로 투자 관련 양자협상을 진행하였다.

<표 2-10> 한·중 FTA 주요내용

구범·협력	서비스·투자	상품관련	총칙
지재권	서비스	상품	최초규정 및 정의
투명성	금융	원산지(PSR포함)	예외
환경	통신	통관 및 무역원활화	분쟁해결
전자상거래	자연인의 이동	무역구제	제도
경제협력	투자	위생·검역	최종조항
		무역기술장벽	
*중국이 최초로 FTA에서 별도 챕터 채택(금융,통신,전자상거래)			

자료:KOTRA 중국사업단

이밖에 한·중 FTA 협정에서는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시켜, 총 310개 상품이 한국 원산지 자격으로 한·중 FTA 발효를 통해 관세특혜를 즉시 획득했다. 또한 해외가공무역위원회를 새로운 증설하기로 하였다.

분야별로 보면, 중국은 철강 분야에서 일부분 상품에 대해 관세철폐를 실현할 것이고, 전기·전자 분야에서 일부분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시행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농산품 분야에서는 한국의 일부분 농산품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는 한중 양국은 문화레저산업과 금융, 여행업 등 분야에서 깊이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한·중 FTA의 협상 주요결과를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1) 관세철폐

한국과 중국 모두 관세철폐 방식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매해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선형 철폐(linear cut) 방식을 채택하여, 협정 발효일에 1년차 관세를 적용하고, 매년 1월 1일에 추가로 인하를 하는 철폐방식에 합의하였다.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FTA는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년차 관세 인하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 철폐에 해당되는 품목의 대부분은 선형 철폐 방식을 적용하여 매년 일정한 비율로 관세가 인하되어 최종 연도에는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된다.³⁶⁾

36) 이승오, “한·중 FTA가 철강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p13.

사품시장 개방: 한중 양국은 20년 이내 90%이상 교역품목에 대한 관세철폐를 하기로 한다.

- 즉시철폐: (한)419억불- (중)734억불
 - (한) 품목 수 50%, 수입액 52%- (중) 품목 수 20%, 수입액 44%
- 10년내 관세철폐: (한) 623억불- (중) 1,105억불
 - (한) 품목 수 79%, 수입액 77%- (중) 품목 수 71%, 수입액 66%
- 20년내 관세철폐: (한) 736억불- (중) 1,417억불
 - (한) 품목 수 92%, 수입액 91%- (중) 품목 수 91%, 수입액 85%

한·중 FTA의 관세철폐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20년 내에 품목수의 91%, 수입액 85%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되었고, 중국의 무관세 상품 비율은 약 20%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광산품, 전자제품, 통신, 금융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한국은 품목수의 92%, 수입액 91%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무관세 품목은 거의 50%에 달하는데 일부분 철강제품, 기계전력설비, 화학공업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쌀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국의 산업 통상자원부가 표명했듯이 한·중 FTA는 정식 발효되는 당일에 제1단계 관세율 양허가 시행되었다. 그다음에 2016년 1월 1일부터 제2단계 관세율이 적용되었다.

지금까지 관세양허 현황을 종합해보면 아래<표 2-8>와 같다. 한국 측면 보면, 한국은 무관세 상품은 수입액의 91%, 품목수의 92%에 해당하는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그리고 일부분 전동기, 변압기의 관세를 철폐하고, 5~20년 내에 점차적으로 생활용품의 관세를 철폐하였다. 반면에 중국은 철강 분야에서는 무역자유화를 실현하여 최종적으로 수입액의 85%, 품목수의 91%에 해당하는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또는 냉장고, 텔레비전, 의료기계 등 전기·전자 상품의 관세를 무관세 수준으로까지 낮춘다.

또, 농수산물 분야에서 한국은 쌀, 마늘, 고추 등 농산품과 오징어, 장어, 갈치 등 20종 수산품을 여전히 관세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제조업 분야 보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모두 관세 양허대상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실현 가능한 무역자유화 대상에 들어있지 않다.

<표 2-11> 한·중 FTA 발효 후 양국의 수입관세 양허현황

(단위:%)

구분	한국의 대한국 수입관세			중국의 대중국 수입관세		
	2012년 기준	발효 10년	발효 20년	2012년 기준	발효 10년	발효 20년
야채과일	77.5	59.3	55.1	14.1	2.5	0.1
곡물	460.2	457.2	457.1	50.3	49.9	49.9
기타작물	125.8	124.0	123.6	12.6	3.1	0.9
가공식품	26.8	21.6	20.6	18.7	12.6	11.0
농산품	39.2	36.6	35.1	19.6	13.8	10.3
어업	16.2	9.3	4.9	10.9	0.5	0
광업	2.6	0.5	0	2.3	0	0
직물제품	9.4	2.8	1.8	8.9	2.9	0.3
의류	12.5	5.6	5.3	16.4	1.2	0
가죽제품	7.9	0.4	0.4	7.4	2.0	0.2
서유, 화학제품	5.0	0.3	0.1	6.1	2.3	1
금속, 비금속	4.2	0.8	0.6	7.7	2.3	1.4
전자제품	0.7	0.1	0	0.7	0.3	0.2
기타제조업	6.0	0.5	0.1	7.6	2.8	1.9

자료:FTA강국,KOREA(<https://www.fta.go.kr/main/situation/fta/main/>)

(2) 원산지 규정

① 한·중 FTA에서는 별도의 특수 규정이 있지 않고서는 다음에 열거한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만 협정국에서 생산된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상품이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경우.

나. 상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경우.

다. 상품이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되고 부속 서 3-가에 합치되는 경우. 그리고 그 상품이 원산지 적용 가능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② 협정에서는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부록 3-B에 열거된 상품도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치가 원산지 지위를 신청하는 최종 상품의 본선 인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 해당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을 가공하는 데 사용된 재료의 총 가치의 60% 이상 될 것이다

③ 한중 FTA에서 사용되는 역내가치포함비율(RVC)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역내가치포함비율RVC} = (\text{본선인도가격FOB}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 \times 100 / \text{본선인도가격FOB}$$

그중 역내가치포함비율은 백분율로 표시하고 화물에 따라 역내가치성분의 최저비율은 40%, 45%, 50%, 또는 60%이다. RVC 계산 공식이 $VNM / FOB \times 100 \leq 55\%$ (또는 65%)인 아태자유무역협정(APTA)과 비교해보면, 중국 기업은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할 때 실제 현황을 결합하여 알맞은 공식을 선택함으로써 최대한의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다.

④ 한·중 FTA는 누적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 요건이 없다. 다만 한중 양국의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에서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그렇게 결합된 상품 또는 재료는 다른 쪽 당사국에서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로 간주된다.

⑤ 협정은 특혜관세대우를 주장하는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은 당사국 간 직접 운송된다. 통과 또는 환적의 경우에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수출 당사국에서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 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이나 결합운송 서류와 같은 운송서류, 보관 또는 컨테이너를 적출하는 경우,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수출 당사국에서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 경로가 포함된 복합 운송이나 결합운송 서류와 같은 운송서류, 그리고 비당사국 관세당국이 제공하는 증빙서류. 수입국 관세당국은 그러한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러한 비당사국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그러한 지정에 대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에 통보할 수 있다.

(3) 기술장벽

① 한·중 FTA 협정은 각 당사국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다.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서의 정보교환을 포함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 비용을 감소시키며 양 당사국 간 양자 무역을 증진 하고 촉진하는 것, 그리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 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② 한중 양국 간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정부기관의 모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적용된다. 정부기관이 그러한 기관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구매 규격, 또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에서 정의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한다.

③ 한중 양국 한쪽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국은 상대국의 기술규정이 자국의 기술규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들 규정이 자국의 규정의 목적을 적절히 충족하는 것으로 납득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그리고 한중 양국 한쪽이 상대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지 아닌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제3장 한국과 중국의 농산품 교역

제1절 양국의 농산품 교역

1. 한국과 중국의 농업

(1) 한국

2017년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 인구는 5,140만 명이고 국토 면적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인구 밀도는 중국의 4배 이상에 해당된다.³⁷⁾ 산지구는 국토의 2/3을 차지하며, 농경지를 사용할 수 있는 평야는 연해지대에 약간 분포 하고 있다. 2012년에 한국의 농경지 면적은 180만 헥타르로 전국 국토 면적의 18%를 차지하며 평균 일인당 경지 면적은 0.3헥타르였다. 이 수치는 중국의 0.8 헥타르 평균 일인당 경지 보다 낮다. 한국 농업의 농업 총생산액은 268억 달러로 한국 GDP의 3.4%를 차지하는데 중국보다 훨씬 낮았다.³⁸⁾

이 뿐만이 아니다. 한국 농촌 인구의 고령화는 갈수록 심각해져서 한국 농업이 취약해지고 있다. 선진국 들은 경제 전환로 인해 노동 집약형 산업을 아시아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한국 등 아시아의 다른 국가와 지역이 이 기회를 잡고 경제가 급속히 발전을 시키다. 한국에서 농업 및 관련 생산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년대 50%에서 2014년 5%로 떨어진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청장년은 선택해서 도시에 일하고 생활하면서 점차 농업을 벗어난다. 현재 농촌에서 농업생산 종사하는 대다수가 노인이다. 이것도 한국 농촌의 인구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부각 되고 있다. 농업 생산으로 얻은 소득과 공업 생산에 따른 수입에 비해 현저한 열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진입해서 일하는 것을 선택한다. 이는 한국 농업 인구의 고령화를 더욱 심화 시키며 , 인구 구조의 고령화는 가뜩이나 약한 한국 농업을 더 취약하게 만든다.

37)한국통계청2017

38)钟哲浩, “中韩FTA签约时农业领域的应对方案[D]”,华东理工大学 硕士学位论文, 2013, pp.35-37.

국내 자연조건의 제한으로 한국 정부가 농업을 지원할 수 없게 되었다. 국내 농경지 면적의 절반 이상이 벼를 재배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쌀의 자급률은 모든 농산품 중에 가장 높은 것이고, 기타 곡물 작물은 예를들어 밀, 옥수수 같은 심각한 부족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량 수입이 필요하다. 농업의 다른 분야에서는 한국의 축산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육류와 유제품에 대한 자급률이 국내 채소와 과일 부문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 이다. 한국 정부는 자국 농업에 대해 매우 중시하고 농업에 대한 정책과 재정에서 불균형을 하면서도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쉽다. 국에 농협을 있는데 게다가 농협이 갖고 있는 광범위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농업분야의 대외 개방이 한국에서 줄곧 거부되고 있는 것도 이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8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 부실 사태로 세계 경제가 불경기에 빠졌다. 한국은 경제 불경기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나라와 FTA 협상을 벌여야할 수 없게 선택한다. 그에 따른 것은 국내 농업의 개방이다.³⁹⁾

<표 3-1> 농업경제 관련 지표 동향

구분	2003년	2007년	2014년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 비중	5.5	4.2	2.6
농가소득/도시가구 소득비율(%)	95.1	8.6	78.2
가구당 농가부채(천원)	26,619	29,946	27,878
농업 인구	485	403	343
농촌인구중 60세이상 비율(%)	25.9	33.1	40.3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 정부는 자국 농업의 근본적인 변혁을 통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표 3-1>보면 한국 농업 시장 계속 개방되면서 국내 농업 인구는 더 줄어들고, 농업 인구 구조의 고령화는 더 부각 되면서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지금 문제는 한국 농업이 서방 선진국에 대한 개방을 선택해야 하고 같은 발전 모델을 선택하거나 혹은 새로운 조정을 진행함으로써 농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선진국에 대한 개방을 선택한다면 결과는 값 싼 수입 농산물의 침입이 자국 농민의 이익을 침해 받게 된다. 본국 농민의 수입이 너

39)杨欢庆, “中韩FTA对两国农产品贸易的影响及对策分析”.东北财经大学 硕士学位论文, 2014, pp.20-21.

무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 보조금을 대폭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농업 경영 모델에서 가정 단위의 경영 모델은 여전히 주요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과 선진국의 저렴한 수입 농산물에 대항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이 농업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개방의 결국이 한국 농업인구가 더 떨어질 것이다. 한국정부의 응대 조치는 그의 농업에 대해 비교적 철저한 개혁을 해야 한여 원래의 농업을 참신한 산업으로 만든다.

(2) 중국

중국이 땅이 넓고 생산물이 풍부하고 농업 자원 총량이 풍부할지라도, 중국 인구는 아주 많기 때문에 , 1인당 평균 자원은 오히려 매우 적다. 예를 들어 중국이 경작 가능한 면적은 미국, 러시아와 인도에 이어 세계4위를 차지하지만, 1인당 경지 면적은 1.4타르도 미치지 못하며, 세계126위이다. 이것은 캐나다의 1/18이고 , 인도의 1/20에 해당한다. 중국의 1인당 삼림면적은 세계107위 이하이고, 1인당 녹지 면적은 세계76위 이하이다 . 게다가 중국이 공업화와 도시화를 급속하게 추진함에 따라 ,토지의 수요량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경작 가능한 면적은 여전히 계속 줄어들고 있고, 더욱이 심각한 것은 중국의 경지가 면적이 끊임없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⁴⁰⁾

<표 3-2> 중국 농업 생산총액 현황

(단위:억 위안화)

년도	총액	재식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2012	89,453.0	46,940.5	3447.1	27,189.4	8,706.0
2013	96,995.3	51,497.4	3902.4	28,435.5	9,634.6
2014	102,226.1	54,771.5	4256.0	28,956.3	10,334.3
2015	107,056.4	57,635.8	4436.4	29,780.4	10,880.6
2016	112,091.3	59,287.8	4631.6	31,703.2	11,602.9

출처: 《中国统计年鉴2013-2017》

40)위남사, “농업무역에 끼치는 한·중 FTA가 영향과 대책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p.27.

<표 3-2>에 따라 보면, 우선 중국의 농업 총생산액이 끊임없이 오르고 있다. 《中国统计年鉴》의 관련 통계 수치에 따르면, 2016년 중국 제 1 산업 즉 농업 총 생산액은 112,091.3억 위안으로 2015년 107,056.4억 위안보다 5% 포인트 증가한다. 2016년의 농업 총 생산액 중 재식농업 생산액은 59,287.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되고, 임업 총 생산액은 4,631.6억 위안으로 전년의 4436.4억 위안에 비해 4.4% 증가한다. 목축산업의 총 생산액은 31,703.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다. 어업 총생산액은 11,602.9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포인트 증가한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농업 통계를 보면 중국 농업은 지난 몇 년간 전체 생산액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재식 농림 목영 어업의 각 산업 생산액은 모두 증가된다.

중국의 농업 총생산량은 높지만 중국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1인당 농업 자원이 매우 적은 편이다

<표 3-3> 2017년 세계 주요 국가 1인당 농경지

(단위: 헥타르ha)

호주	캐나다	아르헨티나	러시아	미국	브라질
2.13	1.25	0.93	0.85	0.51	0.37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한국	세계
0.28	0.15	0.08	0.03	0.03	0.20

자료: 世界银行中文数据库(<http://data.worldbank.org.cn/>)

<표 3-3>는 세계은행이 집계한 2017년 세계 주요국가 1인당 경지 면적이다. 2017년 중국 농업 자원 면적이 미국 러시아 인도에 이어 세계 4위이지만 인구 밀도가 워낙 높아 중국의 1인당 경지 면적은 0.08헥타르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세계 평균의 40%에 불과하다. 호주와 캐나다의 1인당 경지 면적은 중국의 27 배, 16 배에 해당하다. 프랑스와 독일처럼 국토가 작은 나라에 비해 중국은 여전히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중국 농경지의 연면적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중국 경제의 최근 몇 년의 발전은 중국의 도시화와 공업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간의 부동산 산업이 낳은 큰 유혹에 따라 토지에 대한 수요 특히 농업 용지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 농업의 경작지가 최근 몇 년 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CCTV 웹 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농경지 면적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곡선을 그린다. 이는 2009년 13538만 46ha, 2016년에는 13493만 33ha이다. 2016년 중국 농경지 면적은 7만 6000ha를 감소했고,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농경지 면적의 끊임없는 감소와 인구 증가로 중국의 1인당 경지 면적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농업 노동력의 경우 중국의 현황은 농업 노동력이 많지만, 이 집단의 문화적素質은 보편적으로 낮다. 중국 다년간 추진한 9년 의무 교육이 아직도 전면 실현되지 않은 것은 현 단계에서 중국의 교육체제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력은 대부분 의무 교육을 완성하지 못하고, 고교 및 이상 문화 수준을 갖추는 노동자가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농업 인구素質의 저하로 농촌의 현대화 발전을 제약 하여,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가 더욱 확대 되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물가 수준과 관련된 생활비가 계속 증가되면서, 단순히 농업에 의존해 생활을 만족 시킬 수 없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농촌 노동력을 도시에 유입되고, 결국에 농촌 여성과 노인들이 노동력의 주력이 된다. 노동력 구조의 변화가 농촌의 현대화 발전을 가로막고, 농촌의 노동력의 문화적 소양의 저하는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현재 중국 농업의 기계화 수준은 매우 낮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단행한지 30여년 지난다. 중국은 경제 기적을 이뤘고, 경제의 이륙은 어느 정도에 농업의 과학기술 분야의 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중국 농업 기반 수준이 낮아, 중국 농업이 같은 기간 미국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큰 차이가 있고 가장 두드러진 표현은 농업의 기계화 수준이 낮은 것이다. 현재 농업 생산의 대부분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연구 표명은 중국의 농업 단위 생산이 미국의 몇십년 전의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 농민은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농업 생산은 3억 명의 미국인을 부양한다. 중국 농촌 인구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현재 중국 농촌에서는 가정적으로 가정적인 농업 생산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다, 농민 1인당 토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대부분은 작은 땅이다. 집중 생산할 수 없어 생산 규모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대

형 기계화 작업이 농업생산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에 중국은 많은 농산물 수출대국으로써 정가 발언권 없었다. 이 같은 국면이 나타난 원인은 소농 경제가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크게 존재로 인해 중국 농민들은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단 의식과 단체의 관점을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농산물 가격은 수입상에 달려 있다. 게다가 현재 중국 농민들의 브랜드 의식과 표준화 의식이 높지 않아, 많은 제품들이 국제 기준에 도달하기 어렵다. 국제 기준에 도달 하더라도 브랜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의 노동력 원가가 낮아도 중국 농산물 가격이 낮은 수준이다. 농산물 가격의 높낮이는 농민 소득의 증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이 분야에서 농민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해 전통 관념을 점진적으로 바꾸고, 이에 상대적인 브랜드 의식과 표준화 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 시장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 농민의 수입을 늘려 농촌 경제를 개선하게 된다.

2. 양국의 농산품 무역 현황

(1) 한국

1) 수출입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2016년 일년 의 농림축산품 전체 수입액은 29,671백만 달러고 2015년 동기대비 1.8% 감소하였다. 이 중에서 농산품은 2015년 동기대비 수입액이 1.3% 하락하였으며 17,665 백만 달러로 분석되었다. 주요 곡류의 품목인 쌀, 밀, 보리, 옥수수 등 수입이 감소하여 전체 수입액은 13.9% 감소되어 전체 수입량은 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실류와 채소류의 수입액은 각각 1.5%와 4.5%를 상승하였고, 수입량은 각각 1.5%와 4.5% 증가하였다.

또한, 임산품은 2015년 동기대비 5.9%를 감소한 6,200백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축산품 수입은 5,807백만 달러로 2015년 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한국의 농산품 유형별 수입 동향

구분	2015년		2016년		전년대비(%)	
	금액 (백만 달러)	물량 (천 톤)	금액 (백만 달러)	물량 (천 톤)	금액	물량
농산품	17,896	32,777	17,665	33,294	-1.3	1.6
임산품	6,591	14,844	6,200	15,280	-5.9	2.9
축산품	5,728	1,464	5,807	1,538	1.4	5.1
농림축산품 계	30,216	49,085	29,671	50,112	-1.8	2.1

자료: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16. 12월 농림축산물 수입동향』, 2017.

<표 3-5>에 따라서 한국의 주요 농산품 수입 품목은 확인 할 수 있다.

<표 3-5> 한국의 주요 농산품 수입 현황

구분	2016년		전년대비(%)	
	금액 (백만 달러)	물량 (천 톤)	금액	물량
농산품	17,665	33,294	-1.3	1.6
옥수수	1,909	9,813	-14.2	-5.3
밀	1,023	4,461	-9.2	9.8
혼합조제식료품	1,284	273	13.8	13.5
대두	609	1,343	-6.9	1.0
대두박	781	2,027	-7.0	6.3
사탕수수당	675	1,771	8.2	5.5
커피	563	153	2.9	11.1
면	381	235	-21.6	-18.2
바나나	328	365	3.5	0.3
기타과실	372	188	-1.0	3.9
임산품	6,200	152,280	-5.9	2.9
펄프	1,214	2,238	-15.6	-3.1
합판	756	1,076	8.8	19.6
화가암제품	654	2,413	5.1	4.3
판지	327	1,562	-3.3	1.3
침엽수재목	500	1,171	-4.9	3.2
침엽수원목	415	2,819	2.1	0.0
파티클보드	199	829	-1.9	2.5

아몬드	176	23	-25.5	1.8
성형목재	149	119	-2.0	-2.6
기타 가구	286	106	-3.6	0.6
축산물	5,807	1,538	1.4	5.1
쇠고기	2,284	403	13.7	21.7
돼지고기	1,363	502	-4.2	1.7
치즈	429	110	-14.5	-1.7
닭고기	266	128	-10.6	8.2
기타 양모, 섬수모 등	226	3	6.0	-2.8
가족	100	2	-3.9	7.2
유장	102	64	-9.3	11.9
소원피	79	23	-47.0	-47.8
조제분유	70	4	13.7	8.1
기타 축산조제품	101	29	-1.2	7.2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6. 12월 농림축산물 수입동향』, 2017.

<표 3-5>에 보면서 2016년에 한국 농산물 수입액이 17,665백만 달러로 33,294천톤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동기대비 수입 금액이 1.3% 감소하였지만 수입 물량이 1.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임산품은 수입액이 6,200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5.9% 하락하였지만 수입물량은 15,280천 톤으로 전년대비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축산물 수입은 수입액과 물량이 각각 1.4% 와 5.1% 증가한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한진해운에 따른 물류난, 브렉시트 등 글로벌 경제 불안 및 중국의 한류 제한조치 등 악재를 있지만 한국은 신선·가공 농림축산식품과 수산식품의 고른 수출호조로 통해 15년 다소 위축되었던 수출이 증가세로 재 전환되었다. 16년의 농림축산품 전체 수출액은 전년대비 6.6% 증가한 6,465.0백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 기록을 달성한다. 이 중에서 농산품은 수출액이 5,581.2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6.9% 상승하였다. 또는 임산품은 2015년 동기대비 10.0%를 상승한 425.4백만 달러로 나타났다. 반면 축산물 수출은 458.4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7.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 내용은 <표 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6> 한국의 농산품 유형별 수출 동향

구분	2015년		2016년		전년대비(%)	
	금액 (백만 달러)	물량 (천 톤)	금액 (백만 달러)	물량 (천 톤)	금액	물량
농산품	5,220.6	2,775.0	5,581.2	2,904.8	6.9	4.7
임산품	386.6	737.5	425.4	852.1	10.0	15.5
축산품	496.8	122.1	458.4	118.3	-7.7	-3.2
농림축산품 계	6,104.0	3,634.6	6,465.0	3,875.1	5.9	6.6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6년도 농림수산물 수출동향』, 2017.

<표 3-7>에 따르면, 배, 사과 등 신선과실과 전복, 넙치 등 양식수산물 수출이 확대되며 농어가 소득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사과는 신흥시장(베트남 등) 수출이 큰 폭 증가하였으며, 2016년 배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13.3% 상승한 65.5백만 달러로 달하였고, 사과는 수출액이 9.4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딸기, 새송이 및 팽이버섯 등 시설원에 채소류 수출도 호조를 보인다. 딸기 수출액은 전년대비 3.3% 증가하였다. 새송이 및 팽이버섯의 수출액은 각각 10.2%와 0.6% 상승하였고, 수출량은 각각 7.0%와 1.7% 증가하였다.

<표 3-7> 한국의 주요 농산품 수출 현황

구분	2016년		전년대비(%)	
	금액 (백만 달러)	물량 (천 톤)	금액	물량
배	65.5	25.7	13.3	13.9
사과	9.4	4.1	8.1	13.1
단감	8.6	6.8	-22.8	-20.6
감귤	2.6	2.3	-20.9	-18.1
딸기	34.1	4.1	3.3	12.2
멜론	4.2	1.6	13.3	17.6
토마토	13.3	5.4	5.9	-5.4
팽이버섯	16.5	9.3	0.6	1.7

새송이 버섯	17.2	5.1	10.2	7.0
쌀	5.1	2.4	-1.9	5.9
가금육	40.6	29.6	-13.7	-1.5
전복	66.2	2.3	71.7	104.5
넙치	62.3	5.9	6.1	6.5
오징어	112.5	46.7	18.0	-35.8
유제품	173.9	35.5	4.6	1.3
목재류	229.8	765.1	4.1	15.2
인삼류	133.5	5.8	-13.9	-1.6
채소류	257.3	91.7	8.9	6.1
화훼류	26.4	2.9	-7.1	-24.1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6년도 농림수산물 수출동향』, 2017.

2) 주요 교역 대상국

한국 농산품의 주요 수입 국가를 보면 <표 3-8>과 같다. <표 3-8>에 따라서 중국, 미국, 호주, 브라질, 뉴질랜드 등이 한국의 주요 수입 국가로 확인할 수 있다.

<표 3-8> 한국 농산품 주요 수입 국가

국가	2015년		2016년		전년대비(%)	
	금액 (백만 달러)	물량 (천톤)	금액 (백만 달러)	물량 (천톤)	금액	물량
미국	7,000	9,689	6,852	10,662	-2.1	10.0
중국	4,436	6,345	4,425	6,672	-0.2	5.2
호주	2,422	3,428	2,594	4,015	7.1	17.1
브라질	2,201	5,471	2,079	5,258	-5.5	-3.9
뉴질랜드	815	2,664	846	2,739	3.8	2.8
인도네시아	1,082	2,269	1,088	2,277	0.6	0.4
태국	827	1,975	664	1,591	-19.7	-19.4
캐나다	781	1,150	829	1,199	6.1	4.3
칠레	868	967	724	925	-16.6	-4.4
독일	712	318	766	355	7.6	11.4
국가총계	30,216	49,085	29,671	50,112	-1.8	2.1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6. 12월 농림축산물 수입동향』, 2017.

한국의 가장 큰 농산품 수입국은 미국 이다. 2016년에 미국에서 수입액이 6,852백만 달러로 10,662천 톤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중국은 미국에 이어 한국의 농산품 수입국 중에 2위에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에 전체 농산품 수입액 4,425백만 달러 되어 수입 물량이 전년 대비 5.2% 증가하여 6,672천 톤에 달하였다.

또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 일본은 현지 반한감정 둔화와 엔화 강세(달러 대비) 등 수출여건 개선으로 4년 만에 수출증가세 전환하여, 전년대비 3.5% 상승하였고 1,895.8백만 달러로 나타났다. 일본에 이어 중국은 한국의 농산품 전체 수출액에 17.2% 차지하였고 1,473.9백만 달러로 8.3%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는 미국은 한진 사태 불구 물류비 추가지원 등 수출업체 비용부담 완화 노력과 현지 고용지표 상승 등 소비심리 개선으로 수출증가세 지속하고 있었다. 미국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하며 사상 첫 900백만 달러 초과 수출하였으며, 향후 일본과 중국에 이어 수출 1000백만 달러 국가 진입 기대한다.

그리고 베트남과 대만은 수출증가폭이 꾸준히 확대되고 수출액이 각각 460.7백만 과 290.7백만 달러로 달성하였다. 반면 홍콩, 러시아,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에 대한 수출액이 전년대비 소폭의 감소를 나타냈다

이상 내용은 아래<표 3-9>에 확인할 수 있다.

<표 3-9> 한국 농산품 주요 수출 국가

국가	2015년		2016년		전년대비 (%)
	금액 (백만 달러)	비중 (%)	금액 (백만 달러)	비중 (%)	
일본	1,832.2	22.8	1,895.8	22.1	3.5
중국	1,360.5	16.9	1,473.9	17.2	8.3
미국	859.0	10.7	957.2	11.1	11.4
베트남	460.7	5.7	500.3	5.8	8.6
아랍에미라트	335.4	4.2	415.7	4.8	23.9
홍콩	399.2	5.0	388.6	4.5	-2.7
대만	290.7	3.6	332.0	3.9	14.2
태국	215.0	2.7	295.1	3.4	37.2
인도네시아	161.0	2.0	170.4	2.0	5.8
호주	165.0	2.1	169.9	2.0	3.0
필리핀	159.6	2.0	167.2	1.9	4.8
러시아	140.9	1.8	132.5	1.5	-5.9
싱가포르	129.0	1.6	123.4	1.4	-4.4
말레이시아	101.4	1.3	100.5	1.2	-0.9
합계	8,028.4	100.0	8,592.6	100	7.0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6. 12월 농림축산물 수입동향』, 2017.

(2) 중국

1) 수출입

중국 농산품 수출입 현황을 보면 <표 3-10>과 같다. 중국의 농산품 수출입 추세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 동안 2015년에 소폭 하락추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중국 농산품의 수출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중국 농산품 수출입액은 1,845.6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그 중에 수입액은 1,115.7억 달러로 2015년 대비 4.5% 감소하였고, 수출액이 2015년 대비 3.3% 증가하여 729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중국 농산품의 무역적자가 385.8억 달러로 나왔으며 2015년 대비하면 16.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소비능력이 상승됨에 따라 전체 수출입 중에 수출의 비중이 39.5%로 나타났고 중국 농산품 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표 3-10> 중국 농산품 수출입 동향

년도	수출입액 (억 달러)	수출액 (억 달러)	수입액 (억 달러)	수출비중 (%)	전년대비(%)		
					수출입	수출	수입
2005	558.3	271.8	286.5	48.7	9.3	17.7	2.4
2006	630.2	310.3	319.9	49.2	12.9	14.1	11.7
2007	775.9	366.2	409.7	47.2	23.1	18.0	28.1
2008	985.5	402.2	583.3	40.8	27.0	9.8	42.4
2009	913.8	392.1	521.7	42.9	-7.3	-2.5	-10.6
2010	1,208.0	488.8	719.2	40.5	32.2	24.7	37.8
2011	1,540.3	601.3	939.1	39.0	27.5	23.0	30.6
2012	1,739.5	625.0	1114.4	35.9	13.0	4.0	18.7
2013	1850.0	671.0	1179.1	36.3	6.3	7.2	5.8
2014	1,928.2	713.4	1214.8	37.0	4.2	6.3	3.0
2015	1,861.0	701.8	1159.2	37.7	-3.5	-1.6	-4.6
2016	1,845.6	729.9	1,115.7	39.5	-1.6	3.3	-4.5

자료: 중국상무부 2017 (<http://www.mofcom.gov.cn/>)

중국의 농산품 유형별 수출입 현황은 다음의 <표 3-11>과 같다. <표 3-11>에 보면 수산품이 가장 많이 수출한 농산품으로는 1,370.5백만 달러로 2015년에 대비하여 2.9%를 상승하였다. 그 다음에 채소는 1054.6백만 달러로 수출하여 전년대비 16.9% 증가하였다. 또는 곡물의 수출금액이 전년대비 24.7% 증가하여 상승률이 1위에 차지하고 있다.

반면, 유재, 공업용 및 약용 식물이 가장 큰 수입 품목으로 2016년 12월까지 수입액이 3,829.7백만 달러로 나타나 전년보다 3.7% 감소하였지만 다른 수입품보다 수입액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재, 공업용 및 약용 식물은 수입과 달리 매우 적은 수치로 267.3백만 달러만 수출한 것으로 분석되어 전년대비 7.8%를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육류제품 수입은 전년대비 2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적게 수입하는 농산품은 2016년 12월까지 1.2백만 달러만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출입 현황을 보면 유재, 공업용 및 약용 식물의 수출입액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16년 12월까지 4,097.0백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수출입 적자가 나타났고 3,562.4백만 달러에 달했다.

<표 3-11> 중국의 농산품 유형별 수출입 현황(2016년)

구분	2016년		2015년		전년대비(%)	
	수출금액 (백만 달러)	수입금액 (백만 달러)	수출금액 (백만 달러)	수입금액 (백만 달러)	수출 금액	수입 금액
활동물	64.7	39.21	59.8	54.5	8.2	-28.0
축육	36.7	897.7	45.0	586.9	-18.4	53.0
금수육	53.5	128.5	60.8	92.9	-11.9	38.3
수산품	1,370.5	691.4	1,332.4	632.0	2.9	9.4
유제품및 기타 동물제품	69.6	697.6	69.7	620.0	-0.1	12.5
기타 동물제품	177.2	52.2	177.2	46.6	0.0	12.0
생식물 및 꽃	33.1	22.6	30.0	21.8	10.4	3.9
식용 채소	1,054.6	186.2	902.4	262.1	16.9	-28.9
과일과 견과류	548.5	585.0	516.2	601.3	6.3	-2.7
커피,차 및 조미료	298.1	66.7	253.5	39.8	17.6	67.7
곡물	40.1	564.0	32.2	927.8	24.7	-39.2
제분 제품	56.6	89.2	59.4	95.2	-4.7	-6.3
유재,공업 및 약용 식물	267.3	3,829.7	289.9	3,975.0	-7.8	-3.7

식물액즙	125.8	21.4	127.3	22.7	-1.2	-5.9
동식물유지 및 분해제품	58.3	703.9	66.7	789.2	-12.4	-10.8
육류 제품	163.0	1.2	174.1	0.96	-6.4	24.4
수산물 제품	631.2	17.1	626.5	23.0	0.8	-25.6
당류	170.7	146.0	156.2	207.9	9.2	-29.8
코코아 및 제품	42.6	68.5	44.2	87.2	-3.7	-21.4
곡물가루, 녹말가루 제품	147.2	110.0	143.5	94.7	2.5	16.1
채소, 과일, 견과류 등 제품	734.1	99.6	738.9	89.8	-0.6	11.0
잡식품	320.4	215.2	297.7	176.3	7.6	22.0
음료, 술 및 식초	220.2	478.5	199.4	428.2	10.5	11.7
연초 및 제품	137.7	172.8	135.1	186.4	1.9	-7.3
기타 농산품	150.5	850.8	201.2	1,067.4	-25.2	-20.3

자료: 중국상무부 2017(<http://www.mofcom.gov.cn/>)

2) 주요 교역 대상국

중국의 농산품 수출 시장은 주로 선진국 중심이다. 그 중에 일본이 중국 농산품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며 1,003.9백만 달러로 2015년과 비교할때 1.6% 감소하였지만 중국 전체 농산품 수출에 14.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일본에서 수입한 농산품이 74.9백만 달러고 중국 전체 농산품 수입에 0.7%만 차이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1위의 경제 강국이라는 동시에 중국 최대의 농산품 수입국이다. 2016년 12월까지 중국은 미국에서 수입한 농산품 총액은 2384.2백만 달러로, 동년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농산품 총액의 3배가 넘었고 중국 전체 농산품 수입에 21.5%를 달하였다. 또는 미국은 중국 농산품의 주요 수출입 시장으로 전년보다 수출액이 0.1% 하락하였지만 중국 전체 농산품 수출시장의 10.2%를 차지한 것으로 736.1백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또한, 한국은 지리적 우세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의 무역거래가 증가하며 농산품에 대한 거래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한국 농산품 수출액은 466.4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7.4%를 증가한 것으로 중국 농산품 수출시장의 6.5%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베트남도 중국의 주요 농산품 교역 대상국이고 2016년 한 해 동안 중국의 베트남 농산품 수입액은 283.7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농산품에 대한 베트남의 수요가 증가해지고 있다. 2016년 12월까지

중국 농산품이 베트남의 수출 전년에 대비하여 12.8%를 상승하였고 387.0백만 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중국의 주요 농산품 수출시장으로 부상되었다. 또는 홍콩에 대한 농산품 수출은 991.5백만 달러로 일본과 미미한 차이로 중국의 농산품 수출시장 2위에 차지하였으며 전체 중국 농산품 수출에 13.9%를 차지하였고 전년보다 12.1%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홍콩에서 수입하는 농산품의 총액은 홍콩에 수출하는 농산품 총액의 30분의1도 안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홍콩 소비시장이 비교적 작지만 해상운송의 편이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농산품 중계무역으로 해석된다.

이상 내용은 <표 3-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12> 중국의 주요 농산품 교역 국가 및 지역 현황(2016년)

국가 지역	수출액 (백만 달러)	전년대비 (%)	전체 수출의 비중(%)	수입액 (백만 달러)	전년대비 (%)	전체 수입의 비중(%)
일본	1003.9	-1.6	14.1	74.9	14.8	0.7
홍콩	991.5	12.1	13.9	29.3	2.7	0.3
미국	736.1	0.1	10.2	2,384.2	-3.3	21.5
한국	466.4	7.4	6.5	100.7	17.1	0.9
베트남	387.0	12.8	5.2	283.7	4.4	2.6
말레이시아	262.0	-0.4	4.5	216.0	-13.6	2.0
태국	352.6	-7.4	3.5	427.6	-14.4	3.9
대만	229.9	5.4	3.0	74.9	-9.6	0.7
인도네시아	205.5	12.3	2.8	372.8	-7.9	3.4
필리핀	194.0	16.3	2.7	61.8	-10.7	0.6
러시아	192.1	6.7	2.7	199.1	15.9	1.8
독일	185.8	-4.0	2.6	235.8	27.7	2.2
네덜란드	139.3	5.5	1.9	215.3	13.9	2.0
캐나다	106.8	8.7	1.5	536.1	2.7	4.8
영국	104.3	-1.2	1.4	61.8	-2.8	0.6

자료:중국상무부2017(<http://www.mofcom.gov.cn/>)

3) 대(對)한 수출 동향

한국은 중국의 농산품 주요 수출대상국가로 되었고, 지리적으로 가까이고 노동력의 원가 낮은 관계에 따라 많은 농산품을 수출하고 있다. <표 3-12>은 중국 농산품의 대한민국 수출한 동향이며 <표 3-12>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이 대한민국 수출된 농산품은 총 4,425백만 달러로 6,672천 톤에 달하였으며 전년대비 수출액이 0.2% 약간 하락하였지만 수출물량이 5.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중국 농산품 대(對)한 수출 동향

구분	2016년		2015년		전년대비(%)	
	금액 (백만 달러)	물량 (천 톤)	금액 (백만 달러)	물량 (천 톤)	금액	물량
곡류	164.2	194.5	173.5	203.3	-5.3	-4.4
두류	98.0	86.7	83.3	66.9	17.6	29.6
채유종실	145.9	87.0	176.9	87.0	-17.5	0.0
과실류	72.6	67.9	72.6	68.4	0.0	-0.7
채소류	677.4	928.4	631.5	944.9	7.3	-1.7
박료	145.6	893.3	178.2	779.2	-18.3	14.7
사료	113.9	192.0	116.5	211.4	-2.2	-9.2
소오소류	85.4	62.8	88.5	64.4	-3.5	-2.5
주류	41.3	50.2	25.8	30.4	60.1	65.4
과자류	77.8	25.9	73.3	25.2	6.1	2.9
면류	88.6	73.1	86.3	69.8	2.7	4.8
가금육류	25.8	6.9	24.6	6.1	4.9	12.3
합계	4,425	6,672	4,436	6,345	-0.2	5.2

자료:중국상무부2017(<http://www.mofcom.gov.cn/>)

제2절 중국 농산품 대(對)한 수출의 분쟁 사례

1. 2000년 마늘분쟁

1999년11월18일에 한국무역협회는 농협중앙회의 요청에 따라 중국산 마늘에 대한 산업 피해 조사를 요청했으며, 결과 국내 마늘 가격 하락, 마늘 산업 피해가 수입 증가와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1월18일에 한국 재정부는 중

국 마늘 관세가 30%에서 31.5%로 증가 시켰으며, 중한 양측의 협상이 결렬 됐고, 2000년 6월 1일 한국 재정경제부는 중국 마늘에 대해 3년간 긴급 수입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000년에 중국은 WTO에 가입 하지 않았고, 중국 무역 분쟁 해결 시스템이 건전 하지 않다. 마늘 마찰은 전체 사고를 중국 정부가 처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중국은 강력한 무역 마찰 보복능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 1999년 가격 기준으로 , 한국은 820만 달러의 중국산마늘 수출 제한하였다. 반면에 중국은 한국에서 수입이 급증하면서 5억 여 만 달러에 달하는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을 상대로 비대칭 보복을 했고, 2000년 6월 7일 중국 정부가 한국 휴대폰(차량 탑재 배터리· 무선 전화)· 폴리에틸렌을 포함한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때 까지 한중 마늘무역 마찰 시작했다. 한중 양국은 2000년 6월 29일 베이징에서 마늘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고, 결국 2000년 8월 1일에 마늘 협상을 통해 한국은 미래 3년간에 각각 30%, 50%관세율로 32,000t, 33,728t, 35,448t의 중국산 마늘을 수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2001년 4월18일 마늘 협의 규정의 마감일에, 한국은 협의 여건상 중국산 마늘에 대해 수입을 완성 마치지 못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이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중단할 것을 공식 통보했다. 마늘 무역 마찰에 인해 두 번째 한중 무역전을 촉발되었다. 2001년 12월에 한국 농림부가 1/3을 출자해서, 협의에 체결된 중국산 마늘에 대한 수입을 완료된다(한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시장에 전매하다.)2003년에 한국은 중국산 마늘에 대한 보장 조치가 없어졌다. 마늘 마찰이 촉발한 이번 무역 전쟁의 한국 손실은 막대하다.

2. 2005년 한중 김치파동

2001년 한국은 수입의 김치가 393 t, 2004년 7만 26t, 4년 만에 185 배로 늘었고, 이 중 99.9% 가 중국에서 온 것이다 . 한국 농림부는 중국산 김치의 한국 시장 진출 충격에 대한 논의를 벌여, 한국의 김치 산업과 문화를 어떻게 지켜야한다.2005년에 한국국회 의원인 고경화 의원은 중국산 김치의 납 함량 한국 김치보다 3~5배 이상 높은 것을 지적하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유발했으며, 한

국 시장의 배추 값이 급등 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10월10일에 중국 김치가 안전 문제를 없다고 밝혀서, 중국 김치의 판매량이 증가했다. 2005년 10월 21일 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한국시장에 있는 9개 중국 김치에 기생충 알 3 종을 검출했다고 밝혔다. 중국산 김치에 대해 회수·판매 금지 조치를 취했다. 2005년 10월 31일 중국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이 한국산 김치·불고기·고추장·고추장에 기생충 알이 검출됐고, 중국 국가 품질 검사 총국은 관련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는 공고를 냈다.

이와 함께 중국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생산성을 높이고, 한국 김치를 수입하는 생산업체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원료 재배에서 생산·가공·수출까지 전면적인 품질 관리를 통제하며, 낙후한 기업을 도태시켰다. 한중 양국의 적극적인 교류 협력, 게다가 한중 품질 검사 협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 하여, 마찰을 방지 하여 무역 전쟁으로 비화하였다. 2005년 11월 2일 당시 한국외교통상부장관 반지문은 김치무역에 나타날 수 있는 개별 문제가 양국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달 양국 정상회담은 "김치 파동"에 대해서 빨리 식품 품질 모니터링과 관련한 검역 고위층 협의체 제출하고, 식품 위생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 하자는 것이다. 2007년 8월 한국은 위생 허가증을 갖고 있는 중국 김치에 대한 검사 비율을 100%에서 20%로 낮췄고, 2008년 1월 7일 이후 10% 대를 회복했다. 이로써 '김치 파동'은 2년 만에 끝났다.

3. 2015년 산둥성 마늘사건

2014년 11월 산둥성 란룽현 마늘 농가는 한국정부가 중국에 발주한 2200t의 마늘에 입찰했다. 낙찰 후, 마늘 농가는 입찰 문서에 근거 하여 화물 준비했고, 이어 한국 농수산물 식품 유통 공사가 품질 검사에 합격한 뒤에, 마늘을 한국 부산항구로 보내게 된다. 그러나 화물이 항구에 도착 하자, 한국 농림수산물식품부는 품질검사 불합격의 이유로 마늘을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냈다. 마늘 농가는 마늘이 반송되는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화물 반송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000여만 인민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이번 무역을

위한 자금 모으고 대출한 마늘 농가에 큰 압력을 가져 왔다. 전체 사건은 산동 마늘 농가가 국제무역 지식과 리스크 예방 의식을 부족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한국은 연성 조항과 농가 미지의 입찰 조항을 활용한다. 즉 완전히 반영되는 한국 농산물 무역의 특징으로 국내시장 수요상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2000년 중한 마늘 마찰, 2005년 한중 김치 파동과 달리,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가급적 갈등을 증폭 시키는 것을 피하고 있다. 2015년 2월 4일 중국 상무부 대외무역 공사는 이번 사건을 계약 분쟁의 문제로 규정하고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국제적인 통행 분쟁 해결 방식을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부산항구의 높은 저장비용이 때문에 마늘 농가들은 잠시 동안 마늘을 중국으로 운송할 수 없었고, 마늘 농가는 권익 보호의 길을 걷는 것이다.

제3절 중국 농산품 대(對)한 수출의 장애요인

1. 중국 측면의 문제

(1) 농업에 대한 투자 부족

중국은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으로 인구기반이 크고 1인당 땅이 낮다. 국가는 농업에 대한 투자 부족이 중국 농업의 국제화 수준을 심각하게 영향을 끼친다.

우선 중국 정부가 재정적으로 농업에 투자하는 것은 국가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이어 국가 금융기관들은 농업 대출 한도가 적고 농가 대출이 어려운데다 3 농 대출 총액이 해마다 줄고 있다.

또는, 중국 농업의 규모화 적고, 기본적으로 가정단위 농업생산 책임제이고, 농가가 자기 토지 농업 투자에 부족하여 농산물의 대규모 산출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정부도 농업에 대한 투자 부족 문제를 충분히 인식해 온다.

한편 중국정부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3농 문제에 대해 충분히 중시

한다. 2016년의 중앙 1호 문건은 현대화 농업 발전을 통해 전면적인 소강 사회의 목표를 실현 하고 농업의 현대화를 가속화하여 농업 산업화와 규격화발전을 통해 농산물 규모 생산을 늘리고, 중국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

또 한편 빈곤 퇴치의 강도를 높이고, 2020년에는 본격적인 소강을 실현하게 된다. 중점적으로 농촌 교육의 빈곤 문제를 지원하여 매년 정부의 행정 단위의 10% 비용을 줄인다. 이 비용은 빈곤 고교생, 중고생, 대학생한테 매년 5000~8000 위안의 학비와 생활비, 숙박비,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을 빈곤에서 벗어나 새로운 농민을 키운다.

마지막으로 중국 농산품보험의 종류는 적을 뿐만 아니라 그 마저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게다가 중국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농민이 매우 적고 보험비용은 상대적으로 비싸서 이것을 부담한다는 것의 빈곤한 농민들에게 어려운 일이다.

(2) 농산품 국제경쟁력 부족

중국 농산품은 낮은 원가와 저렴한 노동력으로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농산품 품질은 외국에 비해 다소 차이가 모자라다.

첫째, 중국의 농산품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원가를 줄여 가격을 낮춘다, 결과 품질은 보장되지 않으며, 외국과의 무역에서 마찰이 잦아진다.

둘째, 중국 농민들은 전통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아 농업 생산 과정에서 항상 마음대로 하였다, 규범한 지도 부족한 것은 농산물 품질에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 중국도 농업 및 신제품의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생산량을 늘리는 동시에 농산산업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가공생산 기술은 아직 미숙해 농업기업 생산에서 보급할 수 없다.

넷째, 중국 농산품 품질과 안전 수준은 선진국의 수입 안전 규칙이나 기술표준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세계 농산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

또는 중국 농산품 수출 무역 에서는 가공초기 제품이 많아 가공품이 적은 편이다. 중국은 농업기술 수준이 낮아 국제 농산품 업계의 체인중 하류에 차지하고 있다, 국제시장의 영향을 받기 쉽다.

(3) 농산품 품질 부족

중국 농산품 수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농산품 품질이다. 중국의 농산품 생산자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하여 무작정 화학제품을 사용한다. 이런 행위는 수출한 농산품에 농약함량의 표준을 초과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중국의 농산품 품질은 제고되고 있지만 선진국의 '위생검사'도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농산품은 검역표준, 품질표준은 국제표준과 차이가 있으며 중국의 많은 농산품 기술표준이 국제표준에 미달되고 있다.

1978년 이전 중국은 장기적인 계획경제체제하에서 농산품은 줄곧 고산저가(高產低價)를 강조하며 품질경시풍조가 만연해 있었다. 농산품의 저가전략은 우수한 대안이 되고 할 수 있으나 오늘날에는 이런 전략이 많은 국가의 반덤핑제소 구실이 된다. 이외에 중국 농산품의 생산과 가공은 통일된 표준이 부족해 농산품의 표준화 정도를 낮추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중국의 농산품 수출 선진국으로 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4) 단일한 농산품 생산구조

중국 농업 생산 방식은 단일하고, 농업 발전은 가족 단위 농업생산 책임제를 채택하는 제도다. 농산품 생산 조직의 기본 형태는 가족의 경영 생산을 위주로, 점차 농장주 경영 방식으로 확대된다. 농민과 시장 사이에 전문적인 조직 지도가 부족하고, 현재 농민과 시장 사이의 소통 주체인 정부 농업 부문은 전문적인 조직화가 부족하고 시장에 대한 정보 반응능력, 대응 능력도 약하다. 그래서 농업 생산자는 시장에서 경쟁력이 결여된다.

중국 농산품 수출시장은 주로 몇 개국에 집중되고 있고, 농산품 품목도 드물고, 현재 중국 농산품 무역시장은 주로 한일 등 아시아 국가다, 다른 나라에 수출이 적은 편이다. 그리고 중국은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다, 아프리카 등 낙후된 개발도상국 시장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개발되지 않고, 또 선진국과의 기술 장벽을 제한하여 중국 농산품의 수출 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5) 불안정한 농산품 서비스체제

중국 농산품서비스의 체제가 불완전하며 각종 경제와 비경제적인 위험이 농산품 분야에서 더 많아졌다. 도시 시민과 같이 기타 산업에 상응한 사회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급자족하는 농민들의 소농경제사상이 더욱 강화되어 시장 경쟁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켰다. 중국 농업의 관리수준이 낮은 것도 농산품이 국제시장에서 차지해야 할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⁴¹⁾

첫째, 다원화된 생산과 경제체제는 정부 차원의 관리에서의 난이도를 높여 이미 존재하고 있는 몇 가지 표준기술은 실시하기 힘들고 내부적인 악의적 경쟁을 초래하여 중국 농산품의 국제경쟁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리 수단 및 방법이 낙후하여 수출상품의 품질의 경쟁력이 없으며 이로 인해 중국 농산품의 비교우위를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셋째, 농업과 관련된 연간 산업이 미숙하고 중국의 농산품은 발전과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2. 한국 측면의 문제

(1) 농업의 과도한 보호 정책

21 세기는 경제 글로벌화 시대였지만 ,국제 자유무역의 상황에서 지역 민족주의와 보호무역주의는 여전히 여전하고, 강화 추세가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지역 민족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더 뚜렷하다. 주로 외국 기업을 부정하고 외국 상품을 배제하고, 지방 보호주의를 시행하다, 한국에서도 이런 현상이다. 한국은 자국 농업 기업을 지나치게 보호한다. 수입 농산품에 대해 높은 관세 및 기타 통관 절차를 거친다, 한국 농업의 국제화 과정을 어느 정도 방해한다.

또한 한국은 <2002년 HS 출입국 통관편람>을 사용해서 수입 농수산품의 제한을 강화시켰고, 질량 안정검사, 검역요구, 원산지 증명과 성분 함유량 제시 등

41)장성, “중국농산물 무역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48.

여러 방면에서 제한을 강화시켰다. 이는 중국 농산품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지, 중국 농산품은 항상 안정면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납을 함유한 계, 중금속을 함유한 고춧가루 등 이다. 이런 사건들은 한국 국민들에게 불신을 심어주고 중국 농산품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생겨난 비관세장벽은 한중 무역자유화의 주된 장애로 되고 있다⁴²⁾

(2) 정치적 요소 및 문화 장벽

한국정부는 정치경제방면의 요인에 따라 농업·농민·농업 관련 기업에 대해 일련의 보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은 경제적 고려, 다른 한편은 정치적 요구이다. 국제화의 발전배경 아래에서 한국 공업 경제는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농민들은 개방 농업분야에 대해 반대태도 유지하고 있다. 2003년 9월 한국 정부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 총회에 참석하였다. 당시, 한국 농림수산시민부는 쌀시장 개방을 놓고 1500여 명의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들은 멕시코와 서울에서 시위를 벌여 WTO에 반대한다. 시위대표 이경해는 시위에서 자해하며 구급을 무효로 사망하여 전 세계가 경악한다, 결국에 한국은 농민의 호소에 쌀 시장 개방을 포기한다.

한편 한국은 장기적으로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강력 민족 보호주의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서 토종 쇠고기와 경쟁이 심화되었다. 한국 소비자들의 소비 습관 및 본토보호의 정서에 때문에 한국 소비자가 미국산 쇠고기에 보이콧하는 바람에 당시 한미 농산품 무역관계가 팽팽해진다. 또 한편 한국 민간단체인 농협은 60년대'신토불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국민들에게 자국산 농산품을 소비하며 농민들의 이익을 지켜 달라고 호소한다. 이 구호는 한국 국민들의 소비 습관에 장기영향을 주고 한국 국민들은 외국 농산품에 대한 저항감을 느끼게 하며, 한국의 농산품 자유화 무역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한국 무역의 국제화 과정을 어느 정도 가로막고 있다.

중국 농산품은 선천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경쟁 우위를 형성하고 있

42)이충배·노진호·서윤희,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양국의 FTA 추진 전략 비교」,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제12권 1호, 2011.2. pp.211-219

지만, 한국은 자국 농업에 대해 일관되게 보호하는 태도로, 중국산 농산품의 수입에 대해 외면하고, 엄격한 억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중국은 한국이 중국산 농산품에 대해 관세 철폐하는 동시에,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중국의 농산품 한국 수출에 상당한 도전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은 정부·농업·기업 측면에서 건설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중국산 농산품의 원활한 한국 수출에 위한 기초를 다질 것이다.

제4장 한·중 FTA에 따른 대(對)한국 수출활성화 방안

제1절 한중 농산품의 양허 현황

1. 한·중 FTA 체결전의 농산품 관세 현황

한중 FTA 체결 전 한국은 중국산 농산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적용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산 농산품의 對한국 수출은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였다. 한국의 FTA 체결 전 농산품 관세의 주요 현황은 아래 <표 4-1>과 같다.

<표 4-1> 한·중 FTA 체결전 한국 측 농산품 관세 상황

(단위:%)

품목	최혜국대우 평균 세율	제로관세 품목비율	최고 관세
축산품	20.7	2.9	88
유제품	65.0	0	177
과일, 채소	57.7	0.19	889
커피 및 차	52.9	0	513
곡물 및 곡제품	148.6	0.18	799
유채씨, 유지	38.7	3.36	629
설탕	14.6	0	241
음료, 연초	31.2	0	268
면화	0.0	100	0.0
기타 농산품	19.6	20.7	721

자료: 한중무역투자정보망(<http://www.chinakorea.mofcom.gov.cn/>)

한국은 대부분의 수입 농산품에 대해 WTO MFN 관세를 적용 하였다. 2014년의 평균 관세는 53.68%에 달하였으며, 전체 상품의 평균 관세는 13.28%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관세율이다. 품목 기준으로 농산품의 94.4%는 관세를 부과 하고 있으며, 나머지 5.6%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특히 농산품 중 9.98%는 관세율이 100%를 넘으며, 중국이 확실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농산품에 대해서는 수백%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과일, 채소 등은 약 889%에 달한다.

또한, 한국 적용되는 관세 쿼터가 광범위하며, 관세 쿼터를 적용하는 농산품이

전체 농산품의 15.29%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 유제품, 꿀, 사료, 인조실, 쌀 및 미제품 등이 있다.

2. 한·중 FTA 발효후의 1차산품 양허 내용

한국 측 양허는 전체 1,611개 농산품 중 일반품목 589개(36.6%)의 즉시나 10년 내에 관세 철폐하기로 하였다. 민감 품목 441개(27.4%)의 품목을 10~20년 내에 철폐, 초민감 품목 581개(36.1%)로 합의하며, 초민감 품목 중에 548(34%)의 품목을 양허 제외, 7개(0.4%)의 품목을 TRQ(저율관세할당)⁴³⁾하고, 나머지는 부분감축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아래 <표 4-2>와 같이 일반품목은 589개 품목 중에서 소, 오리, 돼지, 대두, 양모 등 216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식혜, 해바라기씨유, 대두유, 조제식료품, 우황, 파스타 등 209개 품목은 5년 내에 철폐하기로 하였다, 코코넛, 흰포도주, 코코넛, 마요네즈 등 164개 품목은 10년 내에 철폐하기로 하였다. 전체 품목 중 약 36.6%에 달한다.

<표 4-2> 한·중 FTA 한국 측 농산품 양허내용(일반품목)

양허유형		품목수	비중(%)	주요품목
일반 품 목	즉시철폐	216	13.4	소, 오리, 돼지, 대두, 돈지, 가금지, 팜유와 그 분획물 기타, 토마토 종자, 양모, 박류,, 겨자씨, 생모피, 야자유기타, 당밀, 라드유, 무종자, 야자유등
	5년 철폐	209	13.0	해바라기씨유, 조제식료품, 우황, 파스타, 옥수수박, 식혜, 사향, 사탕무, 건빵, 밀, 면실유, 대두유, 스파게티, 양조식초, 라면 등
	10년 철폐	164	10.2	꼬냘, 흰포도주, 코코넛, 베이커리제품, 샤프란, 스 위트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 소나무, 붉은포도주, 보드카, 마요네즈, 아몬드등
소계		589	36.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http://motie.go.kr/www/main.do>)

43)저율관세할당 (TRQ : Tariff Rate Quotas):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아래 <표 4-3>민감 품목은 441개 품목중에서 아이스크림, 사과주스, 바나나, 팜핵유, 올리브, 소시지 등 202개 품목은 15년 내에 철폐하였다, 도라지, 매니옥, 소주, 맥주, 인삼음료 등 239개 품목은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하였다. 민감 품목은 전체의 27.4%에 달한다.

<표 4-3> 한·중 FTA 한국 측 농산품 양허내용(민감품목)

양허유형		품목수	비중(%)	주요품목	
민감품목	15년 철폐	202	12.5	팜핵유, 카레, 올리브, 아이스크림, 쇼트닝, 사과주, 바나나, 망고스틴, 마가린, 두리언, 구아버, 파인애플, 망고, 팝콘, 커피 크림, 겨자, 소시지, 배합사료, 토마토페이스트, 스위트콘 등	
	20년 철폐	11년차	2	0.1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기타과실(잼, 젤리, 마말레이드 기타)
		13년차	1	0.1	기타한약재(기타식물 - 향료, 의료용 등)
	20년 철폐	236	14.6	도라지, 매니옥, 데어리 스프레드, 소주, 맥주, 낙화 생유, 인삼음료, 기타채소, 채소류의 혼합물, 춘장, 콩, 유장 등	
소계		441	27.4		

자료:산업통상자원부 (<http://motie.go.kr/www/main.do>)

아래 <표 4-4>초민감 품목 중에서 김치, 혼합조미료, 고사리, 매니옥, 귀리 등 26개 품목은 부분 감축의 로 양허한다. 한·중 FTA에서는 양허대상 농산품의 34%에 해당하는 보리, 감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548개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한다.

<표 4-4> 한·중 FTA 한국 측 농산품 양허내용(초민감품목)

양허유형		품목수	비중(%)	주요품목	
초민감품목	현행관세 + TRQ	7	0.4	참깨, 팥, 대두, 사료용 식물성 부산물 기타, 맥아, 전분, 대두	
	부분감축	평균20%부	11	0.7	김치, 혼합조미료, 기타소오스, 팥, 당면, 고사리, 들깨, 당류, 낙화생 기타, 송이버섯, 채소
		130%로감축			

양허제외	548	34.0	쌀, 보리, 팥콘용 옥수수,감자, 쇠고기,돼지고기,닭 고기,분유,치즈,감귤류 오렌지, 사과 배 포도,키위, 호박, 고추,마늘, 양파,인삼류 등
소계	581	36.1	

자료:산업통상자원부 (<http://motie.go.kr/www/main.do>)

한·중 FTA는 한국이 기체결한 FTA와 비교하여 중국 측의 시장 개방도가 높고, 한국 측에 대한 보호비중이 비교적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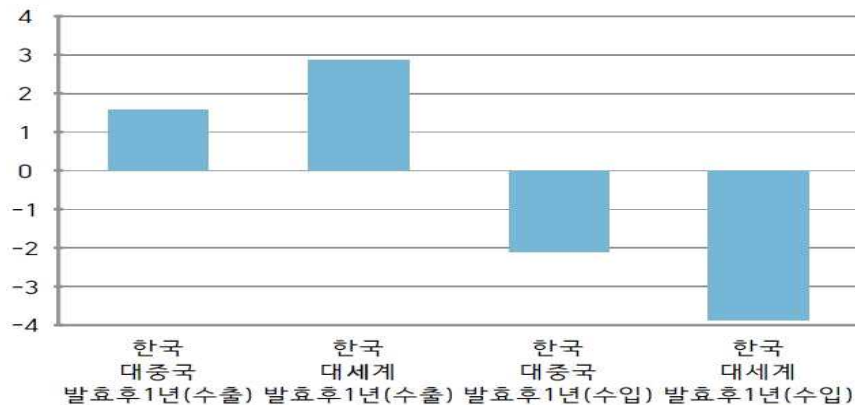
3. 한·중 FTA 발효후 한국 농산품 수출입의 변화

한·중 FTA 발효 1년 후에 對중국 농산품 전체 수출은 전년대비 1.57% 증가하여 같은 기간 對세계 수출증가율(2.85%)보다 낮고, 발효 1년 후에 對중국 농산품 전체 수입은 전년대비 2.1% 감소하여 같은 기간 對세계 수입 감소율을 對세계 (3.86%)보다도 낮아 한다.

중국 농산품 수입의 경우 2.1% 감소하는 원인은 전 세계 시장의 불경기, 중국 경제 발전 속도 주춤, 그리고 상품자급도의 향상 등이 있다. 한중 FTA는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효 후 1년의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한·중 FTA는 완충 역할을 발휘하여 양국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 힘을 불어넣을 것이다.⁴⁴⁾

<그림 4-1> 한·중 FTA 발효 이후 한국 농산품 무역 동향

(단위: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44)유영선. “한·중 FTA 1년, 농산물 피해 없다고”. 농업인신문.2016.12

제2절 중국 농산품의 대(對)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농산품 수출 확대

<그림 4-2>에 따라 보면, 한중 FTA 체결은 중국 농산품이 한국에 수출에 대한 확실한 촉진 역할을 하고 있다. 2016년 중국 농산품 수출액은 2015년 대비 7.4% 증가 했다. 반면에 2015년의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증가율은 -12.2%이다. 그리고 2015년 상반기의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증가율은 -15.1%이다⁴⁵⁾. 이처럼 한·중 FTA는 수출액의 동기대비증가율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 시키며, 수출 확대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확대효과는 아직 부족하고, 한중 FTA에 따른 혜택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그림 4-2> 2011년-2016년 중국 농산품 수출상황



자료: 중국상무부 <http://www.mofcom.gov.cn/>

한·중 FTA 체결 전 한국은 중국산 농산품에 대해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중국산 농산품의 對한국 수출을 심각하게 저해하였다. 예를 들어, 곡물,

45) 중국상무부 <http://www.mofcom.gov.cn/>

수산물 등의 수출 증가 등이 둔화 되었다.

한·중 FTA 발효 후 한국은 농산품 수입 관세가 크게 감소하여 중국 농산품이 한국 시장에 대거 유입 되면서 거대한 무역 창출 효과가 나타났다.

한·중 FTA 체결에 따라 한국은 냉동 채소와 과일통조림과 일부 냉동 생선 등 중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농산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철폐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 1차산품의 가격경쟁력은 높아지게 되었으며, 중국산 상품의 한국 시장 진출의 기초를 닦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농산품 개방이 FTA 상 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유럽 연합(EU)과 미국에 대한 단기적인 개방도가 중국보다 높다. 이에 중국 상품은 단기적으로 한국에 수출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장기적으로 한국 시장 개방도가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농산품은 관세 양허로 인한 혜택을 누리게 될 수 있다. 중국 상품은 대규모로 한국 시장에 진출할 것이고, 한국도 중국 저가 농산품을 대량 수입이 예상된다.

2. 양국 간의 농산품무역 마찰 완화

최근 몇 년간 한·중 양국의 농산품의 무역 분쟁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 취약한 농업에 대한 과잉보호 때문이다⁴⁶⁾. 양국의 농업 발전 수준, 자연자원, 그리고 노동력 자원의 차이로 양국의 농업 시장 무역은 확실히 균형을 잃었다. 한국은 국내의 각종 압력으로 농산물 시장에 대해 계속 높은 강도 보호를 하고 있다. WTO에서 여러 차례의 다자 협상을 거쳐 한국의 관세 수준이 이미 크게 낮아진다. 한국 정부는 이어 비관세 장벽을 찾기 위한 보호책을 찾기 시작하였다. 주로 검사 검역 표준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FTA로 인해 문제는 점점 사라질 것이며, 시장은 점점 더 개방되고 확장될 것이다.⁴⁷⁾

46)陈晓娟, “中韩FTA对中国农产品贸易的影响研究,” [世界农业], 中国农业大学, 2014.5. pp.116-118.

47)卢东伟、孙东升,“农业展望：农产品关税减让对中国农产品贸易的影响与展望”, 《世界农业》, 2008, pp.34-37.

3. 농업 산업구조 개혁

중국 농산품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한국보다 강하지만, 이 우세는 주로 중국의 노동력 원가가 낮은 기초 위에 세워진다. 이에 따라 중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대부분 농산품은 부가가치가 낮은 농산품과 초급 농산품이고 가공 농산품이 적은 편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노동집약적 농산품에서 원가우세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미 뚜렷한 약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중국의 1인당 농경지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난 10년 동안 1인당 경작지가 0.11hm²에서 0.08hm²로 낮아지고, 게다가 노동력 원가와 농업 생산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에 중국 농산품이 가지고 있는 가격우세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단순히 노동력의 자원을 의존하는 농업 발전 모델을 조정하고, 산업 구조 조정을 가속화하며, 산업화, 전문화, 집약화, 표준화 발전의 길을 걷는 것이 조속히 필요하다.

또한 한·중 FTA 체결은 인구 14.5억 명, GDP 11만억 달러에 이르는 공동시장을 형성 한다. 이 시장 규모의 확대, 양국 간 시장접근 조건의 인화로 한중 양국이 우세자원을 상호 보완하고, 농업 자원의 배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중국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한중 농업자원 교류에서 중국의 농업자원과 노동력의 우세는 한국의 자금과 기술 우위를 양성적으로 상호 작용하게 될 것이며, 이는 중국 농업기업의 과학연구 투자 확대와 농업 산업 구조의 최적화에 어느 정도 자극을 줄 것이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중국의 농업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다.

제3절 중국 농산품의 대(對)한국 수출의 활성화방안

1. 농업 자금투입의 확대

일부 농산품은 최근 몇 년간 무역경쟁력이 떨어졌다. 중국정부는 농산품 무역의 발전을 위해 일부 수출의 불안정적인 농산품에 대한 자금투자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농산품 자금투자 촉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공공재정의 투입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농업과 농촌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투자, 농업보조금 제도와 농업융자 제도의 개선을 통해 농업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⁴⁸⁾

2. 농산품의 국제경쟁력 제고

친환경 농산품 브랜드를 만들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브랜드 전략을 실시하고 브랜드 제품으로 외국에 진출해야 한다. 농산품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반드시 품질을 보장하고 브랜드 영향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농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을 유지하고 자신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독특한 디자인 상표 개발을 중시하고 친환경 농산품인 명품을 개발하여 세계에 진출한다. 국제 농산품시장에서 우선 큰 시장부터 개척하고 고부가 가치의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개도국과의 협력도 강화되고 일차제품의 생산지로 활용하여 생산 선진 농업의 기술을 결합해서 일차제품을 재가공하도록 활용한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한 농산품을 자기의 브랜드로 세계에 진출시켜서, 자기 나라 농산품 브랜드의 영향력과 경쟁력을 제고를 해야 한다. 농산품 표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합격한 인증 체계 구축에 힘을 써야 한다. 단계적으로 농산품의 핵심 브랜드 가치와 핵심 품질을 향상하고 보완해야 한다.

48) 杨欢庆, “中韩FTA对两国农产品贸易的影响及对策分析”, 东北财经大学 硕士学位论文, 2014, p.35.

양질의 제품만 보유하고 있어야 국제 시장을 차지할 수 있다.

동시에 농산품 무역 업체들이 한국의 수입 농산물 검사 및 검역 절차 기준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학습해야 해서 수출이 지속되고, 확대되게 해야 한다. 또한 농산품 무역상이 정보 추적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국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끊임없이 자체제품의 생산 표준 제도를 보완이 필요하다.

3. 농산품의 품질 제고

한국 농산품 관세 양허 결과에 볼 수 있으며, 관세 철폐의 폭이 제한되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관세 철폐하는 제품도 대부분 초급 농산품이다. 반면 정밀 가공된 고부가 가치 농산품을 제외하거나 예외적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중국의 농산품 수출 확대 효과의 동시에 중국 농산품의 품질 향상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⁴⁹⁾

우선 농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강도를 높여야 한다. 정부는 기존의 농업 과학 연구 부문에 대해 충분한 자금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동시에 농업 생산 기술의 혁신과 신제품 재배의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농업 기술 인재 육성과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 또는 정부는 낙후된 농촌과 산간벽지 등에 대해서 농업연구 개발기구의 건립을 제창하고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 농산품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는 전체 농업 생산 과정을 관통하는 품질 안전기준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농산품 산지환경, 생산투입물 등부터 최종 포장, 운송까지 국제 농업기술과 접목하는 목적으로 도달 한다. 이와 함께,싼 값으로 이기는 이념도 전환하며, 품질으로 이기는 노력해야 한다. 정밀 가공하는 농산품의 발전을 중시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다원화 경영을 하여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4. 대(對)한국 신규 수출품목의 발굴

중국 대(對)한국 수출의 증대를 위해서 중국은 신규 수출품목을 찾아야 한다.

49)주샤오둥,“중국의 농산물 수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pp.47-48.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농산품 소비시장 조사를 통해 한국의 식품소비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신규수출 품목은 농산품의 수요에서 가격보다는 한국의 부유층과 중산층이 중시하는 품질과 맛을 타겟으로 정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대부분의 부유층과 중산층이 살고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홍보와 판매를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중앙채널을 통한 TV광고는 한국 전역에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 홍보효과는 크지만 비용이 많이 나올 것으로 그 부문이라 업체나 정부의 지원이 필요 한다. 또는 대도시의 판매에서는 대형마트의 진입을 통한 판매경로의 확보를 중시해야 한다. 이러한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신규수출 품목은 고품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동시에 다른 제품과 차별화되는 중국의 원산지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5. 농산품 무역 서비스 혁신체제 확보

중국 정부는 국제 간 서비스 수준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무역보호정책을 신중하게 실시해야 한다. 정부가 FTA등 자유무역협정의 보장조치를 했을 때부터 양국 마찰이 확대되지 않게 하기 위해 양국 간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마찰 원인 및 피해 손상 요소와의 인과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동시에 무역 손실 및 평가를 통해 무역 마찰의 다른 요인을 찾아내고 대비해야 한다.⁵⁰⁾

또는 정치, 경제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공정하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무역 분쟁을 처리하며 국제 무역 통합의 규칙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주관적인 무역 보호 정책을 줄여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향상 될 수 있게 한다. 국제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무역장벽을 없애야 한다. 주변의 무역 파트너와 관련한 제품 기술표준 등에 대한 효과적인 소통과 교류를 하며 호혜평등하고 양측의 정보를 공유해서 기술을 공동개발 및 교류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급적인 기술무역장벽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거나 줄여들게 할 수 있으며, 쌍무 무역이 효과적으로 공동 추진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한다. 한국과의 농산품 수출입에 관련

50)黄冠群,“中韩FTA关税减让对中国向韩国农产品出口的影响分析”, 吉林大学 硕士学位论文, 2016, p.44.

있는 절차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양국 교역을 촉진한 다음으로 양국 농산품 무역의 품질기준에 대한 충분히 이해하여 기술무역장벽을 줄이고 호혜원칙이 적용되게 한다.

6. 국제무역 협상기술 및 전략 향상

국제 무역 시장에서 무역마찰은 자주 발생하며 무역 마찰분쟁이 발생할 때 적극적인 대응과 협상을 통해 신속하게 해소하고 소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WTO 규범을 충분히 학습하고, 활용하여 국제 법적기준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동시에 국제 무역 인재를 양성해야 하며, 고교 교육과정 관련전공을 설치하고 수업해서 무역사례를 학습 및 분석해야 한다.⁵¹⁾ 무역인재를 육성하여 국제 무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소통을 쉽게 할 수 있다. 또는 중개조직과 기업협회는 무역장벽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개조직과 기업협회는 정보를 수집과 분석을 중시하면서 해외 기술 장벽에 대한 적법성 평가 및 자문해서 농산품 무역상에게 필요한 농산품 수입기준 및 기술규칙을 숙지해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산품 업종 협회는 기업이 국제무역 분쟁의 소송할 때 적극적인 지원도 해야 한다.

7. 한국 농업협회의와 협력교류 강화

한중 양국은 지리적 위치가 가깝고, 비슷한 문화배경을 갖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상호 거래교류가 시작되었고, 이런 것들은 모두 쌍방 농업 협력 교류분야에서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중국은 농산품 생산, 가공 등에서 기술이 한국에 크게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한·중 FTA에 가져온 중국 농산품의 품질 도전에 순응하기 위해 한국 농업 협회와의 대화 강도를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 양자 농업 협회의 협력 대화 체제를 구축하여, 공동한 농업문제에 대한 논의를 벌여, 공동의 농업 협력 목표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우선, 농산품 정보 기술 교류 플랫폼

51) 杨明明, “中韩自贸区对中国农产品出口韩国的影响研究”, 安徽大学 pp.39-40.

硕士学位论文, 2018,

품을 구축 할 수 있어, 중국 농업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공동 당면한 농업문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양국 농업의 공동 발전을 촉진한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무역마찰과 분쟁을 피하고, 식품 안전과 통관의 효율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국은 한국 농업 협회와 통일 농산품 안전 기준과 검역 절차를 협의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선 양국의 무역액이 큰 어류, 과일 야채 등을 통일의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검역 절차가 까다롭고 각각 다르며, 무역 분쟁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양국의 검역 절차에 규범화를 필요가 있다.

8. 한·중 FTA 활용을 위한 체계적 계획의 수립 및 지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측은 1,611개 1차산품 중 일반품목 589개 (36.6%),를 즉시철폐 또는 1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하였다. 민감 품목에 해당하는 441개(27.4%)의 품목은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그 외 초민감 품목 581개(36.1%)는 548개(34%) 품목의 양허 제외, 7개(0.4%) 품목의 TRQ(저율관세할당)하고, 그 외 26개 품목은 부분감축만을 시행한다.

이에 중국은 초민감 품목을 제외한 품목을 대상으로 중단기와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선별적으로 수출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중단기적으로 즉시철폐 되거나 10년 내 철폐되는 품목들은 중국 생산자 등이 즉시 FTA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FTA는 기본적으로 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 함으로, 중국 생산자를 대상으로 ① 원산지 증명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② FTA에 대한 홍보를 활발히 하여야 하며, ③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충족시켜 수출 증대 방안 마련 등의 수출을 증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 4-5> 한·중 FTA 농수축산물 중·단기 활용 계획 수립 대상 품목

양허유형	품목수	비중(%)	주요품목
즉시철폐	216	13.4	소, 오리, 돼지, 대두, 돈지, 가금지, 팜유와 그 분획물 기타, 토마토 종자, 양모, 박류, 겨자씨, 생모피, 야자유기타, 당밀, 라드유, 무종자, 야자유등
5년 철폐	209	13.0	해바라기씨유, 조제식료품, 우황, 파스타, 옥수수박, 식혜, 사향, 사탕무, 건빵, 밀,면실유, 대두유, 스파게티, 양조식초, 라면 등
10년 철폐	164	10.2	꼬냘, 흰포도주, 코코넛, 베이커리제품, 샤프란, 스위트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소나무, 붉은포도주, 보드카, 마요네스, 아몬드등
소계	589	36.6	

자료:산업통상자원부 (<http://motie.go.kr/www/main.do>)

장기적으로 즉시 및 10년 내 철폐 품목과 15년~20년 철폐 대상 품목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아래 <표 4-6>와 같은 품목이 대상이며, ① 생산자에 대한 교육의 강화, ② 생산 시스템의 개선 및 선진화, ③ 원산지 증명을 위한 생산 공정의 관리 제도화 등과 같은 규정의 마련과 개선이 필요하다.

<표 4-6> 한·중 FTA 농수축산물 장기 활용 계획 수립 대상 품목

양허유형	품목수	비중(%)	주요품목	
즉시철폐	216	13.4	소, 오리, 돼지, 대두, 돈지, 가금지, 팜유와 그 분획물 기타, 토마토 종자, 양모, 박류, 겨자씨, 생모피, 야자유기타, 당밀, 라드유, 무종자, 야자유등	
5년 철폐	209	13.0	해바라기씨유, 조제식료품, 우황, 파스타, 옥수수박, 식혜, 사향, 사탕무, 건빵, 밀,면실유, 대두유, 스파게티, 양조식초, 라면 등	
10년 철폐	164	10.2	꼬냘, 흰포도주, 코코넛, 베이커리제품, 샤프란, 스위트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소나무, 붉은포도주, 보드카, 마요네스, 아몬드등	
15년 철폐	202	12.5	팜핵유, 카레, 올리브, 아이스크림, 쇼트닝, 사과주, 바나나, 망고스틴, 마가린, 두리언, 구아버, 파인애플, 망고, 팝콘, 커피 크리머, 겨자, 소시지, 배합사료, 토마토페이스트, 스위트콘 등	
20년 철폐	11년차	2	0.1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기타과실(잼, 젤리, 마말레이드 기타)
	13년차	1	0.1	기타한약재(기타식물 - 향료, 의료용 등)
	20년 철폐	236	14.6	도라지, 매니옥, 데어리 스프레드, 소주, 맥주, 낙화 생유, 인삼음료, 기타채소, 채소류의 혼합물, 춘장, 콩, 유장 등
소계	1030	63.7		

자료:산업통상자원부 (<http://motie.go.kr/www/main.do>)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한국과 중국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역사적으로 교류가 많아 문화 및 생활풍습 등 정신적으로 유사성이 높으며, 상호간에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식문화와 소비성향이 비슷하여, 주식 등 섭취하는 음식문화도 유사성이 있다. 음식에 사용되는 주재료도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농업과 수산업 등의 생산측면에서도 상호보완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하여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져 왔으며, 지속적으로 한중간 무역이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1978년 이후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적 변혁과 발전을 꾀하여 왔으며,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세계 경제에 본격적으로 재편입 되었다. 또한 한·중 FTA 체결 이후 양국의 농산품 무역시장도 개방되었다. 이로 인해 농산품 무역이 더욱 확대되었고, 중국의 풍부한 자원 및 거대한 소비 시장, 값 싼 노동력 등은 양국의 무역, 투자 및 시장진출을 확대시키고 있다. 농업 등 1차산업 부문에서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자원이용의 효율성 재고 및 친환경 생산 등이 점차 증가 될 것으로 예측되어 오고 있으며, 한중 양국 간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인 상호의존도는 양국의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며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세계에서 농업 강국이며 한국의 중요한 농산품 무역파트너이다. 반면에 한국은 중국농업에 비해서 농업대국이 아니고 농업은 한국의 고도 민감한 산업이다. 한·중 FTA 발효에 따라 한국은 중국의 농산품에 대해 대단히 신중한 전략을 채택하였다. 한국은 자국의 식품안정을 위해 주요 중국의 수입 농산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였다. 심지어 쌀은 양국의 1차산품에 대한 관심에 매우 민감하다.

하지만 1차산품의 교역 확대는 상호간에 이익을 증가 시킬 수 있는 기회요인이라 볼 수 있다. 중국은 농업생산력과 보유 자원, 노동력과 시장 등에서 비교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농산품 부문은 중국이 세계 상위의 수입국이자 수출국 중 하나이다. 한국은 자본, 기술 등이 중국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 측이 선호하는 완벽한 보완을 구성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 양국은 농산품 무역의 충격이 양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는 동시에 또한 양국 미래의 협력을 통한 경제 성장의 잠재력에 충분한 관심을 두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대(對)한 무역은 규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1차산품 시장에는 상대적으로 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FTA의 발효는 한국 측에는 중국 시장의 개방이 기대되고 있으며, 중국 측에는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농산품 분야의 對한 수출 증가가 기대되어 왔다.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되어 2018년 현재 발효 4년 차를 맞고 있다. 현 시점에서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 농산품의 한국 수출 활성화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첫째, 중국 농산품이 한국으로 수출이 증가함에 따른 중국 농업 종사자 등의 수입 증가이다. 이는 중국의 막대한 농수축산품 생산량이 한국으로 수출됨에 따라 잉여의 상품을 통해 생산자의 이익을 추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중국 농산품을 한국으로 수출하여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향후 추진되고 있는 FTA를 통해 중국 농산품의 세계 시장 진출 전략 마련을 위한 테스트마켓(test market)과 유사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한국은 약 15개 FTA를 발효한 선도적인 FTA 체결국이다. 한국은 다수의 국가들과 많은 FTA의 경험을 통해 원산지규정 준수 및 FTA 활용에 대한 경험이 많다. 이에 따라서 한국의 FTA 활용 경험 등을 파트너쉽 또는 교역 등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FTA 체결 이전과 체결 이후의 농산품 무역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극복 방안과 FTA 활용을 통한 수출 방안을 연구하였다.

장애요인으로는 중국 측면에서 중국의 농업에 대한 투자, 농산품의 국제경쟁력 및 품질 부족, 농산품 생산구조가 단일하고 농산품 서비스 체제에도 문제가 있다. 한국 측면에서 농업 보호 정책, 정치적 요소 및 문화 장벽 등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 농업의 자금투입 확대, 농산품

의 국제경쟁력과 품질을 제고, 신규 수출품목도 발굴, 농산품 무역서비스 혁신체제 확보, 국제무역 협상기술 및 전략 강화, 한국 농업협회와의 협력교류를 강화, 그리고 품목별 한·중 FTA 원산지규정 활용을 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를 종합하면 한·중 FTA 발효 후 가장 중요하는 것은 중국 농산품의 부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고 농산품 생산과정 중에 자금 및 과학기술을 높이는 것이다. 과학기술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높이는 것을 통해 경지면적을 절약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1인당 평균경지면적이 심각하게 부족하고 공업화와 도시화과정 중에 비농건설경작지(非农建设耕地)를 점용하는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정부는 끊임없이 가장 엄격한 경작지보호제도 및 정책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한·중 FTA의 발전은 농업 구조의 조정을 포함한 양국의 산업 구조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중 양국의 경제적 협력은 긍정적인 전망이 있지만 양국의 끝까지 견지하는 공동한 노력도 필요하다. 미래의 발전과정에서 중국은 한국 정부 측과 담화를 강화하고 산업방면에서 협력 방식을 심화하는 것을 통하여 한국과의 안정적인 정치, 경제 환경을 유지하고 양국의 협력적 공통된 인식을 깊게 하며 한중 농업 협력역량 및 양국 농산품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서로의 이해를 심화하는 기초위에서 정치, 경제에서의 장애 요소를 제거하여 양국이 한·중 FTA가 양국에 모두 이익을 얻기 위해 한중 양국은 서로 협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농업은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연구와 발달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 경제현상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농업의 세계화 현상이 계속되면서 농산품 무역은 한중 양국 간의 경제발전 및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한 필요성이 있다. 한중 양국은 상호 경쟁을 되면서 각국의 농업 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상호 보완하고 무역마찰 및 분쟁을 해결시키며 상호이익을 얻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 한계점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중국 농업과 농산품 수출 관련 관계자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반영한 보고서, 통계자료, 논문 등 문헌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제약으로 인해 중국 농산품 대한 수출 현황과 장애요인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 농산품을 수출할 때 실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설문조사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여 본 연구에서 제기된 시사점을 실무적인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지를 입증하는 보완적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광의적으로 한중 양국 농산품 수출입 현황과 중국 농산품 대 한국 수출의 장애요인을 살펴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한·중FTA가 중국 농산품의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구체적인 한·중FTA에 따라 중국 농산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중국 농산품의 한국 수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의 농업 발전과 농산품 수출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한국문헌

- 고준성,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서울, 법무부 한중법학회, 2003
- 구기보, 박창수, 두흔흔, “한중 농산물 교역 현황 및 특화전략 도출”, 「현대중국 연구」, 제18권 제3호, 2016
- 김도훈, “한국의 대외통상정책에서 본 한·미 FTA의 의의·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국제경제학회 추계학술세미나), 2007
- 류승범,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무역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리우위, “중·한 FTA에 따른 중·한 철강 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2014
- 박변순, “중국 시장서 경쟁력 유지위해 한·중 FTA 적극 나서야”, 「조선일보」, 2011
- 박태호, 「지역주의 경제 질서와 한국의 FTA(FTA) 정책」, (한국경제학회창립 30주년 정책세미나, 한국국제경제학회),2007
- 부계미, “한·중 FTA가 한국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12
- 손문정, “한국과 중국FTA체결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양경용, “한·중 FTA 추진이 양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어면근, “한·중 FTA 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 제17호
- 염호, “한·중 FTA 체결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왕지우, “한·중 FTA 체결이 양국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전략 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위납사 “농업무역에 끼치는 한·중 FTA가 영향과 대책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

- 위논문, 2015
- 유영선, “한·중 FTA 1년, 농산물 피해 없다고”. 농업인신문. 2016.12
- 유혜, “한·중 FTA 체결에 따른 한국 농산물시장 개방의 영향에 관한 연구”, 우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이건여, “한·중 FTA의 주요쟁점에 대한연구”, 송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이충배·노진호·서윤희,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양국의 FTA 추진전략 비교」,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제12권 1호, 2011.2
- 장성, “중국농산물 무역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주샤오동, “중국의 농산물 수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정범, “한·중 FTA 발효 후 중국농산물한국수출 영향분석에 관한 연구”, 우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주결선, “한·중 FTA 추진과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주기, “한·중 양국의 농산물 무역의 현황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중리평, “한·중 FTA에 추진에 따른 경제효과 및 대응방안”,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학성용, “한·중 농산물 무역구조와 경쟁력 분석”, 경상대학교 대학원국제통상학과, 2014
- 한설매, “한·중 FTA 체결이 농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호성용, “한·중 농산물 무역구조와 경쟁력 분석”,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황의청, “중·한 FTA 추진상의 주요 쟁점과 양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후륙범, “한·중 FTA의 영향과 대응책에 관한 연구:농산품무역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중국문헌

- 崔明旭, “关于韩中农产品贸易问题研究”, 吉林大学 硕士学位论文, 2003
- 陈晓娟, “中韩FTA对中国农产品贸易的影响研究,” [世界农业], 中国农业大硕士学位论文, 2014.5
- 冯晓玲, “美韩FTA下中国农产品对韩国出口变动分析”, 《世界经济研究》, 2015(1)
- 关秋燕·关春燕·梁成杰, “中韩两国农产品贸易类型分析”, 「商业时代」, 2007年15期
- 郭锐、杨端程, “FTA时代的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发展: 机遇、挑战与思路”, 《当代韩国》, 2015
- 黄冠群, “中韩FTA关税减让对中国向韩国农产品出口的影响分析”, 吉林大学 硕士学位论文, 2016
- 李惠贞, “韩中FTA对韩中贸易的影响”, 对外经济贸易大学 硕士学位论文, 2009
- 李阳, “中国农产品对韩国出口存在的问题及发展对策”, 《企业导报》, 2015,(9)
- 李明全, “중·일·한 농산물무역관계 및 자유무역구의 영향”, 「广西师范大学出版社」, 2010年第9期,
- 林平平, “중한 농산물 산업내 무역현황 및 문제”,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0年第7期
- 凌华, “中韩FTA对两国农产品贸易的影响研究”, 《生产力研究》, 2011 (4)
- 卢东伟、孙东升, “农业展望: 农产品关税减让对中国农产品贸易的影响与展望”, 《世界农业》, 2008.6
- 焦知岳 张冬梅, “中韩FTA实施对两国农产品贸易的影响与策略选择”, <对外经贸实务: 国际商务论坛>, No.5, 河北经贸大学, 2015.6
- 姜南, “中国农业贸易发展的现状, 问题与建议”, 当代经济, 2015
- 牛林杰, “第一届中韩关系论坛综述“, 《当代韩国》, 2015
- 舒朝普, “借势中韩FTA 韩国刷新出口中国新纪录”, 《中国外贸》, 2016
- 许会会, “中国对韩农产品出口现状分析”, 《全国商情》, 2015, (31)
- 王绍媛, “韩国农产品进口贸易管理制度分析”, 「税务语经济」, 2010年第4期
- 杨明明, “中韩自贸区对中国农产品出口韩国的影响研究”, 安徽大学 硕士学位论文, 2018
- 杨欢庆, “中韩FTA对两国农产品贸易的影响及对策分析”.东北财经大学, 2014

张朋珍 《中韩FTA的签订对中国农产品出口韩国的影响研究》, 2017.3
钟哲浩.“中韩FTA签约时农业领域的应对方案[D]”.华东理工大学.2013

웹 사이트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www/main.do>

FTA강국,KOREA <https://www.fta.go.kr/main/situation/fta/main/>

산업통상자원부 <http://fta.go.kr/main/situation/kfta/ov/>

中国自由贸易服务网 (<http://fta.mofcom.gov.cn/>)

한중무역투자정보망 (<http://www.chinakorea.mofcom.gov.cn/>)

중국상무부 <http://www.mofcom.gov.cn/>

산업통상자원부 <http://motie.go.kr/www/main.do>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kait.net>

<ABSTRACT>

A Study on the Export Promotion
Plan of Chinese Primary Commodities to Korea
-Focusing on Korea-China FTA-

Li, Wei(이위/李瑋)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un-Seok, Hur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economic globalization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are attracting more and more countries to ponder. Because of its smaller scope of cooperation, it is easier to negotiate and achieve. In this case, countries establish regional economic association organizations, thus obtaining great economic benefits. In recent years, China and the rok have signed many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with other countries, which enable the two countries to fully enjoy the benefits of trade facilitation.

China and South Korea are geographically close. The two countries not only share history and culture, but also share common interests in reality,

which has promoted the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China-ROK agricultural trade has maintained rapid growth and China is the most important agricultural trade partner of the ROK. In addition, geographical proximity, cultural similarity and other conditions have become the main factors of agricultural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were launched in May 2012 and finally signed on June 1, 2015 through numerous exchanges and discussions. As an important and sensitive industry, agriculture has become the focus of the whole negotiation process

In the agricultural trade in China and South Korea, South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are in a relatively weak position. As a result, South Korea has adopted strict protection policies against China's agricultural exports to South Korea. South Korea is an important trading partner of China and an important agricultural export market, so a Korea-China FTA could have a huge impact on China's agricultural exports to South Korea. However, compared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rad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he growth of China's agricultural exports to South Korea is relatively slow.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the export of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to South Korea, this paper puts forward a series of reasonable promotion programs